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II

상품명은 당사와 제휴한 회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II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7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0
보험료 산출기초	17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8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9
보험가격지수	21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는 고객 니즈에 따라 순수보장형, 50% 만기환급형 또는 100% 만기환급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정기보험입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Ⅲ의 비흡연자 및 건강체, 슈퍼건강체란 무엇이며,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및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무배당 슈퍼건강체할인특약Ⅱ 가입 시 표준체(흡연)와의 보험료 차이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Ⅲ의 비흡연자 및 건강체, 슈퍼건강체는 각 특약의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각각의 건강(흡연)상태와 (2)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건강(흡연)상태 요건

(가) 슈퍼건강체

구분	건강(흡연)상태 요건
흡연여부	평생 흡연한적 없음 ^{주1)}
최고혈압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120mmHg 미만
최저혈압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80mmHg 미만
체질량 지수 ^{주2)} (Body Mass Index, BMI)	20.0kg/m ² 이상 25.0kg/m ² 미만
당뇨 및 혈당	당뇨 진단이력이 없으면서 혈당수치 110mg/dℓ 미만

주1) 평생 동안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경우

주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란 체중(Kilogram)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 (Kg / (m)제곱)

(나) 건강체

구분	건강(흡연)상태 요건
흡연 ^{주1)} 여부	평생 흡연한적이 없거나,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최고혈압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140mmHg 미만
최저혈압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90mmHg 미만
체질량 지수 ^{주2)} (Body Mass Index, BMI)	18.5kg/m ² 이상 26.5kg/m ² 미만

주1) 흡연이란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말함

주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란 체중(Kilogram)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 (Kg / (m)제곱)

(다) 비흡연자

구분	흡연상태 요건
흡연 ^{주1)} 여부	평생 흡연한적이 없거나,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주1) 흡연이란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말함

(2) 피보험자의 가입자격

(가)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19세 이상인 경우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및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무배당 슈퍼건강체할인특약Ⅱ 가입 시 표준체(흡연)와의 보험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표준체(흡연) 보험료	비흡연자 보험료	건강체 보험료	슈퍼건강체 보험료
남자	30세	7,500	5,800	5,200	4,100
	40세	17,000	14,100	12,600	9,700
	50세	41,900	36,900	32,900	24,800
여자	30세	4,300	4,100	3,900	3,700
	40세	8,100	7,700	7,100	6,800
	50세	16,900	16,300	14,600	13,900

[5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표준체(흡연) 보험료	비흡연자 보험료	건강체 보험료	슈퍼건강체 보험료
남자	30세	12,900	10,100	9,000	7,100
	40세	29,100	24,200	21,700	16,600
	50세	69,900	61,700	55,300	42,000
여자	30세	7,500	7,200	6,800	6,400
	40세	13,900	13,300	12,300	11,700
	50세	28,900	28,000	25,100	23,900

[1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표준체(흡연) 보험료	비흡연자 보험료	건강체 보험료	슈퍼건강체 보험료
남자	30세	45,300	35,800	31,900	25,500
	40세	96,100	81,200	73,400	57,500
	50세	203,700	183,500	167,800	133,300
여자	30세	26,900	25,700	24,300	23,100
	40세	48,700	46,800	43,300	41,400
	50세	97,200	94,300	85,200	81,500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만기환급형에 한함)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는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하며,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가산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및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 보험료환급 여부 : 순수보장형, 50% 만기환급형, 100% 만기환급형
- 피보험자 범위 : 개인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10년만기	일시납	37세 ~ 70세
	전기납	만 19세 ~ 70세
20년만기	일시납	32세 ~ 60세
	10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60세만기	일시납	20세 ~ 50세
	10년납	만 19세 ~ 50세
	20년납	만 19세 ~ 4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65세만기	일시납	24세 ~ 55세
	10년납	만 19세 ~ 55세
	20년납	만 19세 ~ 45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5세
70세만기	일시납, 10년납	만 19세 ~ 60세
	20년납, 60세납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80세만기	일시납, 10년납	만 19세 ~ 7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70세

○ 50%만기환급형/100%만기환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10년만기	일시납	30세 ~ 70세
	전기납	만 19세 ~ 58세
20년만기	일시납	25세 ~ 60세
	10년납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59세
60세만기	일시납	21세 ~ 50세
	10년납	만 19세 ~ 50세
	20년납	만 19세 ~ 4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65세만기	일시납, 10년납	만 19세 ~ 55세
	20년납	만 19세 ~ 45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5세
70세만기	일시납	만 19세 ~ 60세
	10년납	만 19세 ~ 59세
	20년납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9세
80세만기	일시납	만 19세 ~ 70세
	10년납	만 19세 ~ 66세
	20년납	만 19세 ~ 59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8세

3.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연납

4.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저 3,000만원 ~ 최고 5억원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II
제도성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취급특약II +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III + 무배당 슈퍼건강체할인특약II + 사후정리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양육자금(사망보험금분할지급설정)서비스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순수보장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50% 만기환급형/100% 만기환급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50% 만기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 × 50% ○ 100% 만기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해당 약관 제20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만기환급금은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만기환급금의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1원 미만의 단수(端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제도성 특약

√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피보험자가 아래의 건강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 이 특약을 청약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건강체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건강상태】	
구분	조건
흡연 ^{주1)} 여부	평생 흡연한적이 없거나,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최고혈압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140mmHg 미만
최저혈압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90mmHg 미만

체질량 지수 ^{주2)} (Body Mass Index, BMI)	18.5kg/m ² 이상 26.5kg/m ² 미만
---	---

주1) 흡연이란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란 체중(Kilogram)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Kg / (m)제곱)

【가입자격】

-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합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19세 이상인 경우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피보험자가 아래의 흡연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 이 특약을 청약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비흡연체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p>【흡연상태】</p> <p>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p> <p>【가입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19세 이상인 경우
--

√ 무배당 슈퍼건강체할인특약Ⅱ

피보험자가 아래의 건강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 이 특약을 청약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슈퍼건강체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건강상태】

구분	조건
흡연여부	평생 흡연한적 없음 ^{주1)}
최고혈압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120mmHg 미만
최저혈압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80mmHg 미만
체질량 지수 ^{주2)} (Body Mass Index, BMI)	20.0kg/m ² 이상 25.0kg/m ² 미만
당뇨 및 혈당	당뇨 진단이력이 없으면서 혈당수치 110mg/dl 미만

주1) 평생 동안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경우

주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란 체중(Kilogram)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Kg / (m)제곱)

【가입자격】

-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합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19세 이상인 경우

√ 사후정리특약

유족들이 사후정리에 필요한 비용(장례비용)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 없이 사망진단서의 제출만으로 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제외)의 최대 2,000만원까지 1 영업일 이내에 먼저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다만, 이 특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 회복) 계약인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선지급서비스특약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잔여 수명을 12개월 이내로 판단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선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다만,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사망보험금액의 최고 5,000만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며, 1,000

만원까지는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양육자금(사망보험금분할지급설정)서비스특약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주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자녀로 지정된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 발생 시 가입자녀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양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 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310	0.000180
40세	0.000780	0.000470
60세	0.004550	0.001730

구분	비흡연자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2	0.000167
40세	0.000611	0.000452
60세	0.003931	0.001665

구분	건강체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21	0.000163
40세	0.000544	0.000428
60세	0.003513	0.001497

구분	슈퍼건강체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14	0.000155
40세	0.000431	0.000405
60세	0.002650	0.001433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 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표준체, 40세 가입, 20년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17,000원)			여자 (월납보험료 : 8,1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51,000	0	0.0%	24,300	-	0.0%
6개월	102,000	0	0.0%	48,600	-	0.0%
9개월	153,000	0	0.0%	72,900	-	0.0%
1년	204,000	14,229	6.9%	97,200	-	0.0%
2년	408,000	135,657	33.2%	194,400	44,000	22.6%
3년	612,000	252,586	41.2%	291,600	90,400	31.0%
4년	816,000	365,114	44.7%	388,800	134,700	34.6%
5년	1,020,000	472,143	46.2%	486,000	175,900	36.1%
10년	2,040,000	826,000	40.4%	972,000	291,800	30.0%
15년	3,060,000	758,000	24.7%	1,458,000	248,800	17.0%
20년	4,080,000	0	0.0%	1,944,000	-	0.0%

[5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표준체, 40세 가입, 20년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29,100원)			여자 (월납보험료 : 13,9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87,300	-	0.0%	41,700	-	0.0%
6개월	174,600	-	0.0%	83,400	-	0.0%
9개월	261,900	17,346	6.6%	125,100	125	0.1%
1년	349,200	85,029	24.3%	166,800	29,800	17.8%
2년	698,400	354,157	50.7%	333,600	148,800	44.6%
3년	1,047,600	622,386	59.4%	500,400	268,400	53.6%
4년	1,396,800	889,814	63.7%	667,200	387,800	58.1%
5년	1,746,000	1,155,343	66.1%	834,000	505,800	60.6%
10년	3,492,000	2,331,100	66.7%	1,668,000	1,018,400	61.0%
15년	5,238,000	3,181,500	60.7%	2,502,000	1,415,000	56.5%
20년	6,984,000	3,492,000	50.0%	3,336,000	1,668,000	50.0%

[1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표준체, 40세 가입, 20년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96,100원)			여자 (월납보험료 : 48,7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288,300	-	0.0%	146,100	-	0.0%
6개월	576,600	-	0.0%	292,200	-	0.0%
9개월	864,900	209,289	24.2%	438,300	100,914	23.0%
1년	1,153,200	477,586	41.4%	584,400	235,086	40.2%
2년	2,306,400	1,572,271	68.1%	1,168,800	782,571	66.9%
3년	3,459,600	2,685,857	77.6%	1,753,200	1,340,957	76.4%
4년	4,612,800	3,819,043	82.7%	2,337,600	1,909,443	81.6%
5년	5,766,000	4,971,629	86.2%	2,922,000	2,487,329	85.1%
10년	11,532,000	10,751,100	93.2%	5,844,000	5,380,800	92.0%
15년	17,298,000	16,755,000	96.8%	8,766,000	8,418,700	96.0%
20년	23,064,000	23,064,000	100.0%	11,688,000	11,688,000	1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40세 남자 기준]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순수보장형	표준체	20년	20년	82.5%	10,000
	비흡연체			68.4%	
	건강체			61.1%	
	슈퍼건강체			47.1%	
50% 만기환급형	표준체	20년	20년	90.0%	10,000
	비흡연체			74.8%	
	건강체			67.1%	
	슈퍼건강체			51.3%	
100% 만기환급형	표준체	20년	20년	79.7%	10,000
	비흡연체			67.3%	
	건강체			60.9%	
	슈퍼건강체			47.7%	

[주계약 40세 여자 기준]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순수보장형	표준체	20년	20년	79.6%	10,000
	비흡연체			75.6%	
	건강체			69.7%	
	슈퍼건강체			66.8%	
50% 만기환급형	표준체	20년	20년	88.9%	10,000
	비흡연체			85.1%	
	건강체			78.7%	
	슈퍼건강체			74.8%	
100% 만기환급형	표준체	20년	20년	78.0%	10,000
	비흡연체			75.0%	
	건강체			69.4%	
	슈퍼건강체			66.3%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8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0
보험료 산출기초	16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8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8
보험가격지수	23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사망 시점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망보험금을 받는 형태(일반형)'나 '경제활동기에 사망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형태(체감형)' 중 선택하여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이하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이라 합니다.)”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② 이 보험은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일부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부터 종신까지로 합니다. 다만, 체감형의 보험기간은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제3보험기간으로 구분하며, 제1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부터 6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은 60세 연계약해당일부부터 8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3보험기간은 80세 연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로 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종목 및 보험기간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일반형 : 보험가입금액
- ② 체감형
 - 제1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70%
 - 제3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30%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비흡연자 및 건강체란 무엇이며,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가입 시 표준체(흡연)와의 보험료 차이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비흡연자 및 건강체는 각 특약의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각각의 건강상태와 (2)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요건

(가) 건강체

구분	건강상태 요건
흡연 ^{주1)} 여부	평생 흡연한적이 없거나,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최고혈압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140mmHg 미만
최저혈압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90mmHg 미만
체질량 지수 ^{주2)} (Body Mass Index, BMI)	18.5kg/m ² 이상 26.5kg/m ² 미만

주1) 흡연이란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말함

주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란 체중(Kilogram)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 (Kg / (m)제곱)

(나) 비흡연자

구분	건강상태 요건
흡연 여부	평생 흡연한적이 없거나,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2) 피보험자의 가입자격

(가)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및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가입 시 표준체(흡연)와의 보험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표준체(흡연) 보험료		비흡연자 보험료		건강체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129,800	111,900	126,300	111,300	123,500	109,100
40세	169,600	145,400	165,300	144,600	161,600	141,700
50세	225,400	191,200	219,900	190,100	214,600	186,100

[체감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표준체(흡연) 보험료		비흡연자 보험료		건강체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71,900	53,700	68,100	53,100	65,200	51,400
40세	90,500	66,400	86,000	65,700	82,300	63,400
50세	115,100	82,900	109,800	82,100	104,800	78,900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상인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생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다만, 신청 당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는 보장성보험으로 하단의 장·단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구분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 목적	사망보험금으로 유족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점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안정적인 목돈(연금액) 설계 가능
단점	연금전환 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액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액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경과년수 /연금개시시점	납입보험료	A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B연금보험
해약환급금	1년	314	0 (0.0%)	188 (59.6%)
	5년	1,572	1,072 (68.1%)	1,445 (91.9%)
	10년	3,144	2,470 (78.5%)	3,178 (101.0%)
	15년	4,716	3,938 (83.5%)	5,190 (110.0%)
	20년	6,288	5,586 (88.8%)	7,742 (123.1%)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전)	종신	-	1억원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
연금연액 (연금 전환 후)	20년	6,288	연263	344

(주)

1. 20년납 종신 기준, 40세 남자, 월납 26.2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연금보험은 재해장해 보험금 1천만원 기준),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2.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로 적용·산출
3.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개인형, 순수보장형, 금리확정형

2. 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일반형		보험계약일부부터 종신까지
체감형	제1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부터 6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60세 연계약해당일부부터 8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3보험기간	80세 연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 상기 나이는 해당 약관 제21조(보험나이 등)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말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일반형	10년납	만 19세 ~ 65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80세납	만 19세 ~ 60세
체감형	10년납	만 19세 ~ 55세
	20년납	만 19세 ~ 50세
	30년납	만 19세 ~ 40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4.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5.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저 3,000만원 ~ 최고 5억원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6.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제도성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취급특약Ⅱ +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사후정리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양육자금(사망보험금분할지급설정)서비스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① 일반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체감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사망보험금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0%
	제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0%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제도성 특약

√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피보험자가 아래의 건강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 이 특약을 청약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건강체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건강상태】	
구분	조건
흡연 ^{주1)} 여부	평생 흡연한적이 없거나,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최고혈압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140mmHg 미만
최저혈압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90mmHg 미만
체질량 지수 ^{주2)} (Body Mass Index, BMI)	18.5kg/m ² 이상 26.5kg/m ² 미만

주1) 흡연이란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란 체중(Kilogram)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Kg / (m)제곱)

【가입자격】

1.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19세 이상인 경우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피보험자가 아래의 흡연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 이 특약을 청약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비흡연체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흡연상태】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가입자격】

1.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19세 이상인 경우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상인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생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적용 기초율 : 연금전환 당시의 기초율 적용
-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 : 전환 전 계약의 전환일시금 (최저보험료 500만원)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만 55세 ~ 75세
- 연금지급 형태 : 종신연금형(10년(10회) 보증)

√ 사후정리특약

유족들이 사후정리에 필요한 비용(장례비용)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 없이 사망진단서의 제출만으로 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제외)의 최대 2,000만원까지 1 영업일 이내에 먼저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다만, 이 특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 회복) 계약인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선지급서비스특약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잔여 수명을 12개월 이내로 판단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선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다만,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사망보험금액의 최고 5,000만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며, 1,000만원까지는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양육자금(사망보험금분할지급설정)서비스특약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주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자녀로 지정된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 발생 시 가입자녀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양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

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

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임신상실자 또는 임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임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75%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310	0.000180
40세	0.000780	0.000470
60세	0.004550	0.001730

구분	무배당 예정 비환연자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2	0.000167
40세	0.000611	0.000452
60세	0.003931	0.001665

구분	무배당 예정 건강체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21	0.000163
40세	0.000544	0.000428
60세	0.003513	0.001497

3. 적용해지율

Q)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해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과 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지율	9.3%	6.2%	5.3%	4.2%	3.3%	2.6%	2.1%	1.6%	1.3%	1.0%	0.8%	0.6%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경과 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지율	1.2%	1.0%	1.0%	0.9%	0.9%	0.8%	0.7%	0.7%	0.7%	0.6%	0.6%	0.6%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① 일반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가입, 표준체,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월납보험료 : 169,60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200,2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508,800	-	0.00%	600,600	-	0.00%
6개월	1,017,600	-	0.00%	1,201,200	-	0.00%
9개월	1,526,400	-	0.00%	1,801,800	-	0.00%
1년	2,035,200	-	0.00%	2,402,400	475,900	19.81%
2년	4,070,400	-	0.00%	4,804,800	2,828,600	58.87%
3년	6,105,600	-	0.00%	7,207,200	5,233,500	72.61%
4년	8,140,800	-	0.00%	9,609,600	7,692,400	80.05%
5년	10,176,000	-	0.00%	12,012,000	10,206,400	84.97%
10년	20,352,000	-	0.00%	24,024,000	22,852,200	95.12%
15년	30,528,000	-	0.00%	36,036,000	36,512,000	101.32%
20년	40,704,000	-	0.00%	48,048,000	51,927,700	108.07%
21년	40,704,000	26,552,650	65.23%	48,048,000	53,105,300	110.53%
25년	40,704,000	28,999,400	71.24%	48,048,000	57,998,800	120.71%
30년	40,704,000	32,249,100	79.23%	48,048,000	64,498,200	134.24%
35년	40,704,000	35,517,550	87.26%	48,048,000	71,035,100	147.84%
40년	40,704,000	38,595,450	94.82%	48,048,000	77,190,900	160.65%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가입, 표준체,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145,40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174,1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436,200	-	0.00%	522,300	-	0.00%
6개월	872,400	-	0.00%	1,044,600	-	0.00%
9개월	1,308,600	-	0.00%	1,566,900	-	0.00%
1년	1,744,800	-	0.00%	2,089,200	365,700	17.50%
2년	3,489,600	-	0.00%	4,178,400	2,435,400	58.29%
3년	5,234,400	-	0.00%	6,267,600	4,554,500	72.67%
4년	6,979,200	-	0.00%	8,356,800	6,723,300	80.45%
5년	8,724,000	-	0.00%	10,446,000	8,942,500	85.61%
10년	17,448,000	-	0.00%	20,892,000	20,124,900	96.33%
15년	26,172,000	-	0.00%	31,338,000	32,308,800	103.10%
20년	34,896,000	-	0.00%	41,784,000	46,194,700	110.56%
21년	34,896,000	23,670,350	67.83%	41,784,000	47,340,700	113.30%
25년	34,896,000	26,094,250	74.78%	41,784,000	52,188,500	124.90%
30년	34,896,000	29,410,550	84.28%	41,784,000	58,821,100	140.77%
35년	34,896,000	32,930,600	94.37%	41,784,000	65,861,200	157.62%
40년	34,896,000	36,539,350	104.71%	41,784,000	73,078,700	174.9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② 체감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가입, 표준체,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90,50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103,1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271,500	-	0.00%	309,300	-	0.00%
6개월	543,000	-	0.00%	618,600	-	0.00%
9개월	814,500	-	0.00%	927,900	-	0.00%
1년	1,086,000	-	0.00%	1,237,200	-	0.00%
2년	2,172,000	-	0.00%	2,474,400	1,105,871	44.69%
3년	3,258,000	-	0.00%	3,711,600	2,291,157	61.73%
4년	4,344,000	-	0.00%	4,948,800	3,498,343	70.69%
5년	5,430,000	-	0.00%	6,186,000	4,727,129	76.42%
10년	10,860,000	-	0.00%	12,372,000	10,667,200	86.22%
15년	16,290,000	-	0.00%	18,558,000	16,735,400	90.18%
20년	21,720,000	-	0.00%	24,744,000	23,204,300	93.78%
21년	21,720,000	11,798,050	54.32%	24,744,000	23,596,100	95.36%
25년	21,720,000	12,538,800	57.73%	24,744,000	25,077,600	101.35%
30년	21,720,000	13,271,700	61.10%	24,744,000	26,543,400	107.27%
35년	21,720,000	13,311,000	61.28%	24,744,000	26,622,000	107.59%
40년	21,720,000	11,673,250	53.74%	24,744,000	23,346,500	94.35%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가입, 표준체,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66,40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76,3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99,200	-	0.00%	228,900	-	0.00%
6개월	398,400	-	0.00%	457,800	-	0.00%
9개월	597,600	-	0.00%	686,700	-	0.00%
1년	796,800	-	0.00%	915,600	-	0.00%
2년	1,593,600	-	0.00%	1,831,200	698,300	38.13%
3년	2,390,400	-	0.00%	2,746,800	1,588,100	57.82%
4년	3,187,200	-	0.00%	3,662,400	2,495,700	68.14%
5년	3,984,000	-	0.00%	4,578,000	3,420,600	74.72%
10년	7,968,000	-	0.00%	9,156,000	7,867,800	85.93%
15년	11,952,000	-	0.00%	13,734,000	12,496,300	90.99%
20년	15,936,000	-	0.00%	18,312,000	17,646,800	96.37%
21년	15,936,000	9,004,800	56.51%	18,312,000	18,009,600	98.35%
25년	15,936,000	9,743,050	61.14%	18,312,000	19,486,100	106.41%
30년	15,936,000	10,637,450	66.75%	18,312,000	21,274,900	116.18%
35년	15,936,000	11,239,050	70.53%	18,312,000	22,478,100	122.75%
40년	15,936,000	11,072,500	69.48%	18,312,000	22,145,000	120.93%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40세 기준]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일반형	표준체	종신	20년	72.9%	10,000	
					비흡연체		71.0%
					건강체		69.4%
	체감형	표준체	종신	20년	79.6%		
					비흡연체		75.7%
					건강체		72.4%
여자	일반형	표준체	종신	20년	70.7%	10,000	
					비흡연체		70.3%
					건강체		68.9%
	체감형	표준체	종신	20년	80.2%		
					비흡연체		79.4%
					건강체		76.6%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4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6
보험료 산출기초	11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3
보험가격지수	14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은 교통재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으로 재해사망, 재해장해 및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입니다.

Q)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란 무엇인가요?

A)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라 함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또는 이용을 위해 대기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별표 5」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개인형, 순수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5년만기	일시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10년만기	일시납, 5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15년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20년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60세만기	일시납, 5년납	만 19세 ~ 55세
	10년납	만 19세 ~ 50세
	20년납	만 19세 ~ 40세
	55세납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5세
65세만기	일시납, 5년납	만 19세 ~ 60세
	10년납	만 19세 ~ 55세
	20년납	만 19세 ~ 45세
	55세납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7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만 19세 ~ 60세
	20년납, 55세납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8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 ~ 60세
	55세납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3.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연납

4.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저 5,000만원 ~ 최고 1억원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
제도성특약	+ 단체취급특약II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5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2억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5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 5,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5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장애급여금 (약관 제5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1억원 × 해당 장애지급률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5조 제5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7,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5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약관 제5조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치아파절 제외)	재해골절 1회당 25만원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 계약 약관의 [별표4]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라 함은 이 계약 약관의 [별표5]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를 말합니다.
3. 교통재해라 함은 이 계약 약관의 [별표3]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를 말합니다.
4. 일반재해라 함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5. 피보험자의 위험(직업 및 직무 등) 변경에 따른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위험지수(변경 전 위험지수)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위험지수(변경 후 위험지수)에 대한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6.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의 경우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도성 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가.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06	0.000002
40세	0.000005	0.000001
60세	0.000012	0.000004

구분	무배당 예정 교통재해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102	0.000027
40세	0.000083	0.000020
60세	0.000194	0.000071

구분	무배당 예정 일반재해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46	0.000021
40세	0.000082	0.000026
60세	0.000273	0.000055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40세 가입,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비위험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3,200원)			여자 (월납보험료 : 1,8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9,600	0	0.00%	5,400	0	0.00%
6개월	19,200	0	0.00%	10,800	0	0.00%
9개월	28,800	0	0.00%	16,200	0	0.00%
1년	38,400	0	0.00%	21,600	0	0.00%
2년	76,800	0	0.00%	43,200	0	0.00%
3년	115,200	0	0.00%	64,800	0	0.00%
4년	153,600	1,293	0.84%	86,400	0	0.00%
5년	192,000	17,129	8.92%	108,000	12,614	11.68%
10년	384,000	61,600	16.04%	216,000	51,950	24.05%
15년	576,000	47,000	8.16%	324,000	34,950	10.79%
20년	768,000	0	0.00%	432,000	0	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남자 40세 기준]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비위험	20년	20년 (월납)	85.5%	5,000
중위험			81.0%	
고위험			81.8%	

[주계약 여자 40세 기준]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비위험	20년	20년 (월납)	87.0%	5,000
중위험			83.4%	
고위험			79.2%	

상품요약서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II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II(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6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8
보험료 산출기초	14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6
보험가격지수	19
보장범위지수	20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고액치료비 관련암, 일반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소액암 등의 진단보험금을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 순수보장성 암보험입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이하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이라 합니다.)”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② 이 보험은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Q)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비흡연자란 무엇이며,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가입 시 표준체(흡연)와의 보험료 차이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비흡연자란 주계약의 보험 가입 적격자로 다음의 ①에서 정한 흡연상태와 ②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 ①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
- ②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의 가입 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의 가입 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로서,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 시점에 만 19세 이상인 사람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가입 시 표준체(흡연)와의 보험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표준체(흡연) 보험료		비흡연자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23,820	16,200	22,170	15,960
40세	30,270	18,990	28,080	18,690
50세	37,950	20,700	35,130	20,370

Q)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 약관 [별표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주계약 약관 [별표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주계약 약관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Q)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장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고액치료비 관련암」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5]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뼈암, 뇌암, 백혈병 등)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암보장개시일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진단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가입 후 2년 미만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Q)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Q)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개인형, 순수보장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남자	여자
80세만기	20년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30년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40세	만 19세 ~ 4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90세만기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60세납	만 19세 ~ 40세	만 19세 ~ 40세
	80세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100세만기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60세납	만 19세 ~ 40세	만 19세 ~ 40세
	80세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4.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대 6,000만원 이내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제도성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 1호)	암 진단보험금 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100만원
	암 진단보험금 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8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400만원
	암 진단보험금 Ⅲ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 관련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5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계약의 약관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4.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약관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6.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7. 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 진단보험금Ⅰ, 암 진단보험금Ⅱ, 암 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 진단보험금Ⅰ, 암 진단보험금Ⅱ, 암 진단보험금Ⅲ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고액치료비 관련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고액치료비 관련암"
암 진단보험금Ⅰ	지급	지급	지급
암 진단보험금Ⅱ	해당 없음	지급	지급
암 진단보험금Ⅲ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급

- 8. 가입 후 2년 미만에 암(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9.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제도성 특약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피보험자가 아래의 흡연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 이 특약을 청약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비흡연체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흡연상태】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가입자격】

- 1.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

으로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19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주계약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75%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암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0	0.000452
40세	0.001673	0.003981
60세	0.009044	0.006720

구분	무배당 예정 고액치료비 관련암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122	0.000100
40세	0.000188	0.000144
60세	0.000473	0.000363

구분	무배당 예정 유방암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00	0.000019
40세	0.000001	0.001083
60세	0.000006	0.001381

3. 적용해지율

Q)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해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과 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지율	4.5%	4.1%	3.8%	3.1%	2.5%	2.1%	1.7%	1.4%	1.2%	1.0%	0.8%	0.6%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경과 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지율	1.2%	1.0%	1.0%	0.9%	0.9%	0.8%	0.7%	0.7%	0.7%	0.6%	0.6%	0.6%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30,27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33,51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90,810	-	0.00%	100,530	-	0.00%
6개월	181,620	-	0.00%	201,060	-	0.00%
9개월	272,430	-	0.00%	301,590	-	0.00%
1년	363,240	-	0.00%	402,120	36,296	9.03%
2년	726,480	-	0.00%	804,240	405,021	50.36%
3년	1,089,720	-	0.00%	1,206,360	756,347	62.70%
4년	1,452,960	-	0.00%	1,608,480	1,111,933	69.13%
5년	1,816,200	-	0.00%	2,010,600	1,471,719	73.20%
10년	3,632,400	-	0.00%	4,021,200	3,173,190	78.91%
15년	5,448,600	-	0.00%	6,031,800	4,770,750	79.09%
20년	7,264,800	-	0.00%	8,042,400	6,277,590	78.06%
21년	7,264,800	3,112,785	42.85%	8,042,400	6,225,570	77.41%
30년	7,264,800	2,388,255	32.87%	8,042,400	4,776,510	59.39%
40년	7,264,800	-	0.00%	8,042,400	-	0.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발생 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암 발생 이후에는 해약환급금이 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18,99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20,55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56,970	-	0.00%	61,650	-	0.00%
6개월	113,940	-	0.00%	123,300	-	0.00%
9개월	170,910	-	0.00%	184,950	-	0.00%
1년	227,880	-	0.00%	246,600	-	0.00%
2년	455,760	-	0.00%	493,200	186,904	37.90%
3년	683,640	-	0.00%	739,800	371,691	50.24%
4년	911,520	-	0.00%	986,400	557,319	56.50%
5년	1,139,400	-	0.00%	1,233,000	743,936	60.34%
10년	2,278,800	-	0.00%	2,466,000	1,576,080	63.91%
15년	3,418,200	-	0.00%	3,699,000	2,337,360	63.19%
20년	4,557,600	-	0.00%	4,932,000	3,105,150	62.96%
21년	4,557,600	1,528,800	33.54%	4,932,000	3,057,600	62.00%
30년	4,557,600	1,125,600	24.70%	4,932,000	2,251,200	45.64%
40년	4,557,600	-	0.00%	4,932,000	-	0.00%

-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 순수보장성 상품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발생 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암 발생 이후에는 해약환급금이 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40세, 월납 기준]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여자	
순수보장형	40	20	71.2%	72.2%	3,000
			66.0%	71.0%	

보장범위지수

Q) 보장범위지수란?

A) 보장범위지수는 보험상품(보장성보험)의 보장수준 비교를 위한 보장수준 비교지수입니다.

▷ 해당 상품의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표준상품의 위험보험료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장범위지수'라고 합니다.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 상품의 위험보험료

※ 회사별/상품별 비교·공시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상품비교·공시실" 참조

[주계약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

구분	보장범위지수
암진단	96.2%

※ 보장범위지수는 일정 가입조건에 따른 보장수준을 나타내므로 가입조건이 변경될 경우 보장범위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보장수준이 높아질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장범위지수 산출시 개별상품 위험보험료 기준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 1,000만원
- 고액치료비 관련암으로 진단 확정시 : 2,000만원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진단 확정시 : 200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진단 확정시 : 100만원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6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9
보험료 산출기초	1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7
보험가격지수	19
보장범위지수	20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는 고객 니즈에 따라 순수보장형 또는 만기환급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고액치료비 관련암, 일반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소액암 등의 진단보험금을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 암보험입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의 비흡연자란 무엇이며,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가입 시 표준체(흡연)와의 보험료 차이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의 비흡연자란 주계약의 보험 가입 적격자로 다음의 ①에서 정한 흡연상태와 ②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 ①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
- ②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의 가입 시점에 '특별조건부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다만, '특별조건부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의 가입 시점에 '특별조건부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로서,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 시점에 만 19세 이상인 사람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가입 시 표준체(흡연)와의 보험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표준체(흡연) 보험료		비흡연자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28,650	18,780	26,670	18,480
40세	34,770	21,180	32,280	20,850
50세	41,370	22,170	38,310	21,81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표준체(흡연) 보험료		비흡연자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49,590	32,670	46,170	32,190
40세	77,790	47,850	72,000	47,070
50세	159,540	81,750	145,020	80,190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사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 약관 [별표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주계약 약관 [별표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주계약 약관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사에서 「고액치료비 관련암」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5]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뼈암, 뇌암, 백혈병 등)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사의 암보장개시일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사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보험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 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에서 진단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가입 후 2년 미만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만기환급형에 한함)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 보험료환급 여부 :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피보험자 범위 : 개인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10년만기	일시납, 5년납, 전기납	32세 ~ 60세
20년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22세 ~ 60세
6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만 19세 ~ 50세
	20년납	만 19세 ~ 40세
	55세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7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만 19세 ~ 60세
	20년납, 55세납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8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 ~ 60세
	55세납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70세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10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 ~ 60세
	55세납	만 19세 ~ 5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70세납, 80세납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55세

○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20년만기	일시납	만 19세 ~ 40세
	5년납	만 19세 ~ 50세
	10년납	만 19세 ~ 48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6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55세납, 전기납	만 19세 ~ 47세
7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58세
	55세납, 60세납	만 19세 ~ 57세
	전기납	만 19세 ~ 53세
80세만기	일시납	만 19세 ~ 50세
	5년납	만 19세 ~ 55세
	10년납	만 19세 ~ 56세
	20년납	만 19세 ~ 46세
	55세납	만 19세 ~ 60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7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10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 ~ 39세
	55세납	만 19세 ~ 40세
	60세납	만 19세 ~ 50세
	70세납, 80세납	만 19세 ~ 48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3.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연납

4.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대 6,000만원 이내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
제도성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 1호)	암 진단보험금 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100만원
	암 진단보험금 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8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400만원
	암 진단보험금 Ⅲ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 관련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5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7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만기환급금 (약관 제7조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계약의 약관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4.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약관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6.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7. 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 진단보험금Ⅰ, 암 진단보험금Ⅱ, 암 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 진단보험금Ⅰ, 암 진단보험금Ⅱ, 암 진단보험금Ⅲ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고액치료비 관련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고액치료비 관련암"
암 진단보험금Ⅰ	지급	지급	지급
암 진단보험금Ⅱ	해당 없음	지급	지급
암 진단보험금Ⅲ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급

8. 가입 후 2년 미만에 암(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9.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도성 특약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Ⅲ

피보험자가 아래의 흡연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 이 특약을 청약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비흡연체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흡연상태】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가입자격】

1.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경우
다만,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는 포함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주계약 가입시점에 만19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주계약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Ⅲ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암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0	0.000452
40세	0.001673	0.003981
60세	0.009044	0.006720

분	무배당 예정 고액치료비 관련암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122	0.000100
40세	0.000188	0.000144
60세	0.000473	0.000363

구분	무배당 예정 유방암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00	0.000019
40세	0.000001	0.001083
60세	0.000006	0.001381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Ⅱ는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 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34,770원)			여자 (월납보험료 : 21,18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04,310	-	0.00%	63,540	-	0.00%
6개월	208,620	-	0.00%	127,080	-	0.00%
9개월	312,930	-	0.00%	190,620	-	0.00%
1년	417,240	41,366	9.91%	254,160	-	0.00%
2년	834,480	423,921	50.80%	508,320	196,414	38.64%
3년	1,251,720	788,657	63.01%	762,480	387,861	50.87%
4년	1,668,960	1,157,173	69.33%	1,016,640	579,939	57.04%
5년	2,086,200	1,529,439	73.31%	1,270,800	772,766	60.81%
10년	4,172,400	3,281,730	78.65%	2,541,600	1,630,140	64.14%
15년	6,258,600	4,913,670	78.51%	3,812,400	2,408,460	63.17%
20년	8,344,800	6,440,250	77.18%	5,083,200	3,185,400	62.67%
30년	8,344,800	4,835,160	57.94%	5,083,200	2,279,250	44.84%
40년	8,344,800	-	0.00%	5,083,200	-	0.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 순수보장성 상품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발생 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암 발생 이후에는 해약환급금이 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77,790원)			여자 (월납보험료 : 47,85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233,370	-	0.00%	143,550	-	0.00%
6개월	466,740	-	0.00%	287,100	-	0.00%
9개월	700,110	17,138	2.45%	430,650	-	0.00%
1년	933,480	236,910	25.38%	574,200	99,257	17.29%
2년	1,866,960	1,129,230	60.48%	1,148,400	633,214	55.14%
3년	2,800,440	2,014,080	71.92%	1,722,600	1,146,261	66.54%
4년	3,733,920	2,913,210	78.02%	2,296,800	1,666,209	72.54%
5년	4,667,400	3,826,680	81.99%	2,871,000	2,193,296	76.39%
10년	9,334,800	8,315,580	89.08%	5,742,000	4,740,450	82.56%
15년	14,002,200	12,857,490	91.82%	8,613,000	7,329,060	85.09%
20년	18,669,600	17,533,680	93.92%	11,484,000	10,106,370	88.00%
30년	18,669,600	18,847,830	100.95%	11,484,000	11,117,790	96.81%
40년	18,669,600	18,669,600	100.00%	11,484,000	11,484,000	100.00%

-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40세, 월납 기준]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여자	
순수보장형	표준체	40	20	72.5%	72.7%	3,000
	비흡연체			67.3%	71.6%	
만기환급형	표준체	40	20	76.9%	77.2%	3,000
	비흡연체			71.2%	75.9%	

보장범위지수

Q) 보장범위지수란?

A) 보장범위지수는 보험상품(보장성보험)의 보장수준 비교를 위한 보장수준 비교지수입니다.

▷ 해당 상품의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표준상품의 위험보험료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장범위지수'라고 합니다.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 상품의 위험보험료

※ 회사별/상품별 비교·공시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상품비교·공시실" 참조

[주계약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

구분	보장범위지수
암진단	96.9%

※ 보장범위지수는 일정 가입조건에 따른 보장수준을 나타내므로 가입조건이 변경될 경우 보장범위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보장수준이 높아질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장범위지수 산출시 개별상품 위험보험료 기준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 1,000만원
- 고액치료비 관련암으로 진단 확정시 : 2,000만원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진단 확정시 : 200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진단 확정시 : 100만원

상품요약서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6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8
보험료 산출기초	16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8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8
보험가격지수	23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뇌출혈, 뇌혈관질환(뇌출혈 포함),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일반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소액암 등의 진단보험금을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 순수보장성 질병보험입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이하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이라 합니다.)”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② 이 보험은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장내용에 따라 []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용	뇌심장보장	암뇌심장보장
[] 부분	뇌·심장	암·뇌·심장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뇌출혈」 및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① 「뇌출혈」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4]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② 「뇌혈관질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3]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③ 「급성심근경색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④ 「허혈성심장질환」 : 주계약 약관 [별표5]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Q)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7]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 약관 [별표8]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주계약 약관 [별표9]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주계약 약관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일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Q)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암보장개시일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진단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가입 후 2년 미만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무엇인
가요?**

A)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A)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개인형, 순수보장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 보험 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보장내용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뇌심장보장
	암뇌심장보장

※ 보험종목의 명칭은 보장내용에 따라 []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용	뇌심장보장	암뇌심장보장
[] 부분	뇌·심장	암·뇌·심장

3.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남자	여자
20년만기	10년납	30세 ~ 60세	30세 ~ 60세
8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30년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9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10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남자	여자
20년만기	10년납	24세 ~ 60세	24세 ~ 60세
8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30년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9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10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대 4,000만원(4구좌) 이내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용	뇌심장보장	암뇌심장보장
	[] 부분	뇌·심장	암·뇌·심장
제도성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뇌출혈 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뇌출혈 지급사유 발생 시	뇌출혈 이외의 뇌혈관질환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해당 없음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지급	지급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해당 없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지급	지급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5호)	암 진단보험금 I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100만원
	암 진단보험금 II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8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4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8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9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10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뇌출혈 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뇌출혈 지급사유 발생 시	뇌출혈 이외의 뇌혈관질환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해당 없음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지급	지급

3.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해당 없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지급	지급

4.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계약의 약관 [별표기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5. '암보장개시일'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6. 이 계약의 약관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이 계약의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8.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9. 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 진단보험금 I, 암 진단보험금 II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 진단보험금 I 및 암 진단보험금 II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암 진단보험금 I	지급	지급
암 진단보험금 II	해당 없음	지급

10. 가입 후 2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11.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제도성 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75%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뇌출혈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36	0.000032
40세	0.000686	0.000340
60세	0.001683	0.001349

구분	무배당 예정 급성심근경색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22	0.000006
40세	0.000488	0.000122
60세	0.002989	0.001394

구분	무배당 예정 암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0	0.000452
40세	0.001673	0.003981
60세	0.009044	0.006720

3. 적용해지율

Q)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해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과 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지율	9.0%	9.0%	9.0%	9.0%	5.2%	4.0%	3.1%	2.3%	1.8%	1.4%	1.1%	0.7%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경과 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지율	1.2%	1.0%	1.0%	0.9%	0.9%	0.8%	0.7%	0.7%	0.7%	0.6%	0.6%	0.6%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e특정 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39,72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45,08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19,160	-	0.00%	135,240	-	0.00%
6개월	238,320	-	0.00%	270,480	-	0.00%
9개월	357,480	-	0.00%	405,720	-	0.00%
1년	476,640	-	0.00%	540,960	37,651	6.96%
2년	953,280	-	0.00%	1,081,920	529,803	48.97%
3년	1,429,920	-	0.00%	1,622,880	988,574	60.91%
4년	1,906,560	-	0.00%	2,163,840	1,448,486	66.94%
5년	2,383,200	-	0.00%	2,704,800	1,909,097	70.58%
10년	4,766,400	-	0.00%	5,409,600	4,006,900	74.07%
15년	7,149,600	-	0.00%	8,114,400	5,830,780	71.86%
20년	9,532,800	-	0.00%	10,819,200	7,374,940	68.17%
21년	9,532,800	3,600,150	37.77%	10,819,200	7,200,300	66.55%
30년	9,532,800	2,294,380	24.07%	10,819,200	4,588,760	42.41%
40년	9,532,800	-	0.00%	10,819,200	-	0.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30,06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34,3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90,180	-	0.00%	102,900	-	0.00%
6개월	180,360	-	0.00%	205,800	-	0.00%
9개월	270,540	-	0.00%	308,700	-	0.00%
1년	360,720	-	0.00%	411,600	5,989	1.46%
2년	721,440	-	0.00%	823,200	390,357	47.42%
3년	1,082,160	-	0.00%	1,234,800	758,966	61.46%
4년	1,442,880	-	0.00%	1,646,400	1,130,874	68.69%
5년	1,803,600	-	0.00%	2,058,000	1,505,863	73.17%
10년	3,607,200	-	0.00%	4,116,000	3,243,420	78.80%
15년	5,410,800	-	0.00%	6,174,000	4,792,420	77.62%
20년	7,214,400	-	0.00%	8,232,000	6,145,880	74.66%
21년	7,214,400	3,020,870	41.87%	8,232,000	6,041,740	73.39%
30년	7,214,400	2,048,480	28.39%	8,232,000	4,096,960	49.77%
40년	7,214,400	-	0.00%	8,232,000	-	0.00%

-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57,82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66,28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73,460	-	0.00%	198,840	-	0.00%
6개월	346,920	-	0.00%	397,680	-	0.00%
9개월	520,380	-	0.00%	596,520	-	0.00%
1년	693,840	-	0.00%	795,360	118,869	14.95%
2년	1,387,680	-	0.00%	1,590,720	841,037	52.87%
3년	2,081,520	-	0.00%	2,386,080	1,518,786	63.65%
4년	2,775,360	-	0.00%	3,181,440	2,199,274	69.13%
5년	3,469,200	-	0.00%	3,976,800	2,881,843	72.47%
10년	6,938,400	-	0.00%	7,953,600	6,027,040	75.78%
15년	10,407,600	-	0.00%	11,930,400	8,774,740	73.55%
20년	13,876,800	-	0.00%	15,907,200	11,055,580	69.50%
21년	13,876,800	5,416,080	39.03%	15,907,200	10,832,160	68.10%
30년	13,876,800	3,592,240	25.89%	15,907,200	7,184,480	45.16%
40년	13,876,800	-	0.00%	15,907,200	-	0.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41,22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47,06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23,660	-	0.00%	141,180	-	0.00%
6개월	247,320	-	0.00%	282,360	-	0.00%
9개월	370,980	-	0.00%	423,540	-	0.00%
1년	494,640	-	0.00%	564,720	47,254	8.37%
2년	989,280	-	0.00%	1,129,440	559,389	49.53%
3년	1,483,920	-	0.00%	1,694,160	1,038,263	61.28%
4년	1,978,560	-	0.00%	2,258,880	1,519,937	67.29%
5년	2,473,200	-	0.00%	2,823,600	2,004,231	70.98%
10년	4,946,400	-	0.00%	5,647,200	4,229,980	74.90%
15년	7,419,600	-	0.00%	8,470,800	6,197,340	73.16%
20년	9,892,800	-	0.00%	11,294,400	7,920,220	70.13%
21년	9,892,800	3,893,160	39.35%	11,294,400	7,786,320	68.94%
30년	9,892,800	2,677,350	27.06%	11,294,400	5,354,700	47.41%
40년	9,892,800	-	0.00%	11,294,400	-	0.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 40세, 월납 기준]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여자	
순수보장형	표준체	40	20	75.1%	72.7%	2,000

□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 40세, 월납 기준]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여자	
순수보장형	표준체	40	20	73.9%	71.9%	2,000

상품요약서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6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8
보험료 산출기초	16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8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8
보험가격지수	23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뇌출혈, 뇌혈관질환(뇌출혈 포함),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일반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소액암 등의 진단보험금을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 순수보장성 질병보험입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이하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이라 합니다.)”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② 이 보험은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장내용에 따라 []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용	뇌심장보장	암뇌심장보장
[] 부분	뇌·심장	암·뇌·심장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뇌출혈」 및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① 「뇌출혈」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4]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② 「뇌혈관질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3]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③ 「급성심근경색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④ 「허혈성심장질환」 : 주계약 약관 [별표5]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Q)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7]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 약관 [별표8]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주계약 약관 [별표9]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주계약 약관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일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Q)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암보장개시일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진단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가입 후 2년 미만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무엇인
가요?**

A)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A)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Q)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개인형, 순수보장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 보험 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보장내용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뇌심장보장
	암뇌심장보장

※ 보험종목의 명칭은 보장내용에 따라 []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용	뇌심장보장	암뇌심장보장
[] 부분	뇌·심장	암·뇌·심장

3.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남자	여자
20년만기	10년납	30세 ~ 60세	30세 ~ 60세
8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30년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9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10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남자	여자
20년만기	10년납	24세 ~ 60세	24세 ~ 60세
8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30년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9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55세	만 19세 ~ 55세
100세만기	1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30년납	만 19세 ~ 60세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대 4,000만원(4구좌) 이내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용	뇌심장보장	암뇌심장보장
	[] 부분	뇌·심장	암·뇌·심장
제도성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뇌출혈 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뇌출혈 지급사유 발생 시	뇌출혈 이외의 뇌혈관질환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해당 없음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지급	지급

3.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해당 없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지급	지급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5. 가입 후 2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6.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5호)	암 진단보험금 I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100만원
	암 진단보험금 II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8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4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8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9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9조 제10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뇌출혈 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뇌출혈 지급사유 발생 시	뇌출혈 이외의 뇌혈관질환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해당 없음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지급	지급

3.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해당 없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지급	지급

4.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계약의 약관 [별표기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5. '암보장개시일'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6. 이 계약의 약관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이 계약의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8.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9. 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 진단보험금Ⅰ, 암 진단보험금Ⅱ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 진단보험금Ⅰ 및 암 진단보험금Ⅱ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암 진단보험금Ⅰ	지급	지급
암 진단보험금Ⅱ	해당 없음	지급

10. 가입 후 2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11.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제도성 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75%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뇌출혈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36	0.000032
40세	0.000686	0.000340
60세	0.001683	0.001349

구분	무배당 예정 급성심근경색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22	0.000006
40세	0.000488	0.000122
60세	0.002989	0.001394

구분	무배당 예정 암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0	0.000452
40세	0.001673	0.003981
60세	0.009044	0.006720

3. 적용해지율

Q)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e특정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해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과 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지율	9.0%	9.0%	9.0%	9.0%	5.2%	4.0%	3.1%	2.3%	1.8%	1.4%	1.1%	0.7%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경과 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지율	1.2%	1.0%	1.0%	0.9%	0.9%	0.8%	0.7%	0.7%	0.7%	0.6%	0.6%	0.6%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e특정 질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39,72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45,08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19,160	-	0.00%	135,240	-	0.00%
6개월	238,320	-	0.00%	270,480	-	0.00%
9개월	357,480	-	0.00%	405,720	-	0.00%
1년	476,640	-	0.00%	540,960	37,651	6.96%
2년	953,280	-	0.00%	1,081,920	529,803	48.97%
3년	1,429,920	-	0.00%	1,622,880	988,574	60.91%
4년	1,906,560	-	0.00%	2,163,840	1,448,486	66.94%
5년	2,383,200	-	0.00%	2,704,800	1,909,097	70.58%
10년	4,766,400	-	0.00%	5,409,600	4,006,900	74.07%
15년	7,149,600	-	0.00%	8,114,400	5,830,780	71.86%
20년	9,532,800	-	0.00%	10,819,200	7,374,940	68.17%
21년	9,532,800	3,600,150	37.77%	10,819,200	7,200,300	66.55%
30년	9,532,800	2,294,380	24.07%	10,819,200	4,588,760	42.41%
40년	9,532,800	-	0.00%	10,819,200	-	0.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30,06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34,3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90,180	-	0.00%	102,900	-	0.00%
6개월	180,360	-	0.00%	205,800	-	0.00%
9개월	270,540	-	0.00%	308,700	-	0.00%
1년	360,720	-	0.00%	411,600	5,989	1.46%
2년	721,440	-	0.00%	823,200	390,357	47.42%
3년	1,082,160	-	0.00%	1,234,800	758,966	61.46%
4년	1,442,880	-	0.00%	1,646,400	1,130,874	68.69%
5년	1,803,600	-	0.00%	2,058,000	1,505,863	73.17%
10년	3,607,200	-	0.00%	4,116,000	3,243,420	78.80%
15년	5,410,800	-	0.00%	6,174,000	4,792,420	77.62%
20년	7,214,400	-	0.00%	8,232,000	6,145,880	74.66%
21년	7,214,400	3,020,870	41.87%	8,232,000	6,041,740	73.39%
30년	7,214,400	2,048,480	28.39%	8,232,000	4,096,960	49.77%
40년	7,214,400	-	0.00%	8,232,000	-	0.00%

-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57,82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66,28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73,460	-	0.00%	198,840	-	0.00%
6개월	346,920	-	0.00%	397,680	-	0.00%
9개월	520,380	-	0.00%	596,520	-	0.00%
1년	693,840	-	0.00%	795,360	118,869	14.95%
2년	1,387,680	-	0.00%	1,590,720	841,037	52.87%
3년	2,081,520	-	0.00%	2,386,080	1,518,786	63.65%
4년	2,775,360	-	0.00%	3,181,440	2,199,274	69.13%
5년	3,469,200	-	0.00%	3,976,800	2,881,843	72.47%
10년	6,938,400	-	0.00%	7,953,600	6,027,040	75.78%
15년	10,407,600	-	0.00%	11,930,400	8,774,740	73.55%
20년	13,876,800	-	0.00%	15,907,200	11,055,580	69.50%
21년	13,876,800	5,416,080	39.03%	15,907,200	10,832,160	68.10%
30년	13,876,800	3,592,240	25.89%	15,907,200	7,184,480	45.16%
40년	13,876,800	-	0.00%	15,907,200	-	0.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표준체,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월납보험료 : 41,220원)			해약환급금 지급형 (월납보험료 : 47,06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23,660	-	0.00%	141,180	-	0.00%
6개월	247,320	-	0.00%	282,360	-	0.00%
9개월	370,980	-	0.00%	423,540	-	0.00%
1년	494,640	-	0.00%	564,720	47,254	8.37%
2년	989,280	-	0.00%	1,129,440	559,389	49.53%
3년	1,483,920	-	0.00%	1,694,160	1,038,263	61.28%
4년	1,978,560	-	0.00%	2,258,880	1,519,937	67.29%
5년	2,473,200	-	0.00%	2,823,600	2,004,231	70.98%
10년	4,946,400	-	0.00%	5,647,200	4,229,980	74.90%
15년	7,419,600	-	0.00%	8,470,800	6,197,340	73.16%
20년	9,892,800	-	0.00%	11,294,400	7,920,220	70.13%
21년	9,892,800	3,893,160	39.35%	11,294,400	7,786,320	68.94%
30년	9,892,800	2,677,350	27.06%	11,294,400	5,354,700	47.41%
40년	9,892,800	-	0.00%	11,294,400	-	0.00%

-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무배당 e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 40세, 월납 기준]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여자	
순수보장형	표준체	40	20	75.1%	72.7%	2,000

□ 무배당 e암·뇌·심장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 40세, 월납 기준]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여자	
순수보장형	표준체	40	20	73.9%	71.9%	2,000

상품요약서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9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0
보험료 산출기초	18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20
보험가격지수	22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은 여성특화질병 등의 진단, 입원 및 수술을 보장하는 온라인 여성 전용 건강보험으로 고객 니즈에 따라 순수보장형 및 100% 만기환급형 중 선택하여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진단보험금을 보장하는 「3대암」, 「여성생식기암」, 「유방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3대암」, 「여성생식기암」, 「유방암」 및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① 「3대암」 : '위의 악성 신생물(암)(C1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암)(C22)',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암)(C34)' 등 주계약 약관 [별표4] '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② 「여성생식기암」 : '외음의 악성신생물(암)(C51)', '질지의 악성신생물(암)(C52)',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C54)', '난소의 악성신생물(암)(C56)' 등 주계약 약관 [별표5] '여성생식기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③ 「유방암」 : '유방의 악성 신생물(암)(C50)'으로 주계약 약관 [별표7] '유방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④ 「갑상선암」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으로 주계약 약관 [별표9]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보장에서 제외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자궁난소적출수술」, 「유방재건수술」 및 「갑상선 전절제 수술」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자궁난소적출수술」, 「유방재건수술」 및 「갑상선 전절제 수술」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① 「자궁난소적출수술」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여성생식기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 체부(자궁 경부 제외)를 절제하거나 한쪽 또는 양쪽 난소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
 - ※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D06)', '외음의 제자리암종(D07.1)', 질의 제자리암종(D07.2)' 등 주계약 약관 [별표6]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② 「유방재건수술」 :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기구를 사용하여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삽입하여 유방을 재건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술(다만, 유두 및 유륜 재건 수술은 제외)
 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을 시행 받고 유방을 재건하는 경우
 2. BRCA(Breast Cance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인 편측 유방암 환자에서 반대측 유방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감소 '유방(완)전절제수술'을 시행 받고 유방을 재건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방재건수술」을 시행한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 ※ '유방(완)전절제수술' : 「유방암」 또는 「유방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종괴가 있는 유두와 피부를 포함하여 유방 조직 전부를 일괄 절제하는 수술
 - ※ 「유방의 제자리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유방의 제자리암종(D05)'으로 주계약 약관 [별표8] '유방의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③ 「갑상선 전절제 수술」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갑상선 조직 전부(양엽과 협부)를 제거하는 수술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진단보험금을 보장하는 「여성 4대 중증 질환」 및 「여성 3대 생활 질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여성 4대 중증 질환」 및 「여성 3대 생활 질환」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① 여성 4대 중증 질환 : 「중증루푸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중증루푸스신염 : 전신홍반성루푸스라는 자기면역성 장애에 의한 신장 질병의 한 형태를 말하며, 주계약 약관 [별표10] '중증루푸스신염 정의'에서 정한 질병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주계약 약관 [별표11]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정의'에서 정한 비가역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골수세포충실도 감소와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서 골수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 골수조혈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1항목 이상의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 필요한 질병상태(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이 아닌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
 - 뇌출혈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12]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급성심근경색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1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② 여성 3대 생활 질환 :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포진», 「통풍」을 말합니다.
-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 주계약 약관 [별표14]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정의 및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대상포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B02)'으로 주계약 약관 [별표15] '대상포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통풍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M10)'으로 주계약 약관 [별표16] '통풍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여성 4대 특정 질환」 및 「특정 부인과 질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여성 4대 특정질환」 및 「특정 부인과 질환」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① 여성 4대 특정 질환 : 「하지의 정맥류», 「성대결절», 「손목터널증후군」 및 「무지외반증」을 말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17] '여성 4대 특정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② 특정 부인과 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18] '특정 부인과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골다공증」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골다공증」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써 주계약 약관 [별표19]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골다공증 분류표' 중 '재해로 인한 골절'
- ② 골다공증 :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주계약 약관 [별표19]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골다공증 분류표' 중 '골다공증'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에서 보장개시일, 보장한도 및 보험금 감액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보장개시일, 보장한도 및 보험금 감액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부명			보장개시일	보장한도	보험금 감액지급
3대암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최초 1회 보장	○
여성 생식기 관련보장	여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최초 1회 보장	○
	자궁난소 적출수술 보험금	여성생식기암으로 인한 경우	암보장개시일	최초 1회의 수술 보장	○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인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최초 1회의 수술 보장	
유방 관련보장	유방암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최초 1회 보장	○
	유방재건 수술보험금	유방암으로 인한 경우	암보장개시일	보험연도 기준	○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인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연간 1회의 수술 보장	
갑상선 관련보장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최초 1회 보장	○
	갑상선 전절제 수술보험금			최초 1회의 수술 보장	
여성 4대 중증 질환 진단보험금		중증루푸스신염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최초 1회 보장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최초 1회 보장	
		뇌출혈		최초 1회 보장	
		급성심근경색증		최초 1회 보장	

급부명		보장개시일	보장한도	보험금 감액지급
여성 3대 생활 질환 진단보험금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보험계약일[부활 (효력회복)일]	최초 1회 보장	○
	대상포진		최초 1회 보장	
	통풍		최초 1회 보장	
여성 4대 특정 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계약일[부활 (효력회복)일]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지 급	X
	수술보험금		수술 1회당 보장	
특정 부인과 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계약일[부활 (효력회복)일]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지 급	X
	수술보험금		수술 1회당 보장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골다공증 수술보험금		보험계약일[부활 (효력회복)일]	수술 1회당 보장	X

- ※ '암보장개시일'이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 유방재건수술보험금 보장한도에서 '보험연도'란 해당 연도 연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연도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하며, 유방재건수술보험금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연간보장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여성 4대 특정 질환 입원보험금' 및 '특정 부인과 질환 입원보험금'의 경우 입원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보험금 감액의 경우 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계약 약관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우먼케어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우먼케어서비스란, '평상 시 건강관리' 및 '질병 발생 시 치료지원', '여성특화질병 관리' 등 여성전용 종합건강관리서비스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제공신청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제공됩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 보험료환급 여부 : 순수보장형, 100% 만기환급형
- 피보험자 범위 : 개인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20년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70세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80세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 100%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20년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70세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80세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3.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대 2,000만원 이내
(다만, 55세 이상 : 최대 1,000만원 이내)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
제도성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만기환급금 (약관 제10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
3대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10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0만원
3대암 : '위의 악성 신생물(암)(C1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암)(C22)',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암)(C34)' 등 [별표4] '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여성 생식기 관련 보장	여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10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0만원
	자궁난소적출 수술보험금 (약관 제10조 제4호)	<p>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난소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p> <p>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난소적출수술」을 받은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p>	[가입 후 2년 이후]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100만원
유방 관련 보장	유방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10조 제5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0만원
	유방재건 수술보험금 (약관 제10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다만, 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함)	[가입 후 2년 이후]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100만원
갑상선 암관련 보장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약관 제10조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갑상선 전절제 수술보험금 (약관 제10조 제8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100만원
	여성 4대 중증 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10조 제9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 4대 중증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여성 4대 중증 질환 각각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가입 후 2년 이후] 1,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0만원
<p>여성 4대 중증 질환 : 「중증루푸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p> <p>세부 사항은 약관 본문 및 해당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여성 3대 생활 질환 진단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0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 3대 생활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여성 3대 생활 질환 각각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가입 후 2년 이후]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100만원
대상포진 [가입 후 2년 이후] 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만원			
통풍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p>여성 3대 생활 질환 :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포진」, 「통풍」을 말합니다. 세부 사항은 약관 본문 및 해당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여성 4대 특정 질환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 4대 특정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여성 4대 특정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하여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수술 1회당 30만원
<p>여성 4대 특정 질환 : 「하지의 정맥류」, 「성대결절」, 「손목터널증후군」, 「무지외반증」으로 [별표17] 「여성 4대 특정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특정 부인과 질환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부인과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특정 부인과 질환」의 치료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를 최고 한도로 보장하며, 연간 1회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두 및 유륜 재건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갑상선 전절제 수술보험금'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여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3대암」, 「여성생식기암」 및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단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2. 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3대암」과 동일한 경우나 그 「3대암」이 동일한 신체기관 또는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또는 「여성생식기암」과 동일한 경우나 그 「여성생식기암」이 동일한 신체기관 또는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또는 「유방암」과 동일한 경우나 그 「유방암」이 동일한 신체기관 또는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3대암 진단보험금'
- 나. '여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 다. '여성생식기암 자궁난소적출 수술보험금'
- 라. '유방암 진단보험금'
- 마.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
13. 제12호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3대암」, 「여성생식기암」 및 「유방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계약의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호에서 제6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14. 제13호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계약의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5.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골다공증 수술보험금'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로 두 가지 이상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수술보험금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입원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여성 4대 특정 질환 입원보험금' 또는 '특정 부인과 질환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가입 후 2년 미만에 이 계약의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호에서 제10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 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18.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19.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도성 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여자		
	20세	40세	60세
무배당 예정 급성심근경색증 발생률	0.000006	0.000122	0.001394
무배당 예정 3대암발생률	0.000010	0.000354	0.001586
무배당 예정 뇌출혈 발생률	0.000032	0.000340	0.001349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e여성건강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여자 (월납보험료 : 27,520원)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82,560	-	0.0%
6개월	165,120	-	0.0%
9개월	247,680	-	0.0%
1년	330,240	3,860	1.2%
2년	660,480	266,460	40.3%
3년	990,720	488,800	49.3%
4년	1,320,960	710,460	53.8%
5년	1,651,200	931,660	56.4%
10년	3,302,400	1,931,640	58.5%
15년	4,953,600	2,866,420	57.9%
20년	6,604,800	3,839,680	58.1%
30년	6,604,800	2,654,240	40.2%
40년	6,604,800	-	0.0%

[1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여자 (월납보험료 : 60,780원)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82,340	-	0.0%
6개월	364,680	-	0.0%
9개월	547,020	-	0.0%
1년	729,360	154,146	21.1%
2년	1,458,720	807,691	55.4%
3년	2,188,080	1,429,897	65.3%
4년	2,917,440	2,060,563	70.6%
5년	3,646,800	2,700,129	74.0%
10년	7,293,600	5,840,800	80.1%
15년	10,940,400	9,120,140	83.4%
20년	14,587,200	12,741,840	87.3%
30년	14,587,200	14,049,740	96.3%
40년	14,587,200	14,587,200	1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여자 40세, 월납 기준]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여자	
순수보장형	표준체	40	20	71.9%	2,000
100%만기환급형	표준체	40	20	80.3%	2,000

상품요약서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8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9
보험료 산출기초	14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6
보험가격지수	17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은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보장하는 온라인 치아보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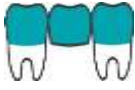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에서 「치아」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에서 「치아」라 함은 '영구치'를 말합니다. '영구치'는 유치(젓니 또는 탈락치)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간니 또는 성치)를 뜻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과치료」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과치료라 함은 약관 제4조(「충전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충전치료', 약관 제5조(「크라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크라운치료', 약관 제6조(신경치료(치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신경치료(치수치료)' 및 약관 제10조(「보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보철치료'를 말합니다.



치과치료		발치 여부	치료방법	
충전치료		X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	
크라운치료		X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		X	치아내부의 치수를 제거하는 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	O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치과치료		발치 여부	치료방법	
보철 치료	브릿지 (고정성 가공의치)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치아를 지지대로 하고, 가공치를 지지대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되는 인공 보철물을 장착하는 치료	
보철 치료	틀니 (가철성의치)	○	치아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보철물(부분틀니, 전체틀니)을 장착하는 시술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에서 보장하는 「충전치료」의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와 '인레이·온레이 외 충전치료'란 무엇인가요?

A) ①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라 함은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복합레진 또는 치과용 합금 등을 이용하여 장착하는 간접충전 치료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 인레이와 온레이는 충전치료 시 충치를 긁어낸 자리를 때우는 부분에 따른 차이를 말합니다.

인레이(Inlay)란 '안에(In)'와 '놓다(lay)'의 합성어로 때우는 부분이 치아의 울록볼록한 씹는 면을 기준으로 안쪽일 경우 또는 좁은 면을 때우는 경우 및 충치가 치아 안쪽까지 파고 들어 좁고 깊게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인레이
온레이(Onlay)란 '위에(on)'와 '놓다(lay)'의 합성어로 때우는 부분이 치아의 울록볼록한 씹는 면 기준으로 안쪽보다 넓을 경우 또는 충치가 심하여 치아 삭제 범위가 넓어 인레이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온레이

② '인레이·온레이 외 충전치료'라 함은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를 제외한 충전치료를 말하며,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등의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치아에 직접 충전하는 치료방법 등이 있습니다.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과 감액기간 및 감액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치과치료보장개시일과 감액기간 및 감액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감액기간 및 감액사항
충전치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해당 치료보험금의 50% 지급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해당 치료보험금의 50% 지급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의 연간 보장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보장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간 보장한도	비고
충전치료	인레이온레이	연간 치료치아 3개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치료한 치아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인레이온레이 외	연간 치료치아 5개	
크라운치료		연간 치료치아 3개	
신경치료(치수치료)		연간 치료치아 3개	
보철치료	임플란트	연간 발치치아 3개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발치한 치아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연간 발치치아 3개	
	틀니(가철성의치)		연간 보철물 1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 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는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A) ①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진단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신경치료(치수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발생 없이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 또는 치료 시작일이 확실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치아성형 또는 라미네이트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② 보철치료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진단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 또는 치아 발치일이 확실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치아성형 또는 라미네이트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 발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철치료(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포함)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의 보철치료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아 발치」의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 A) 보철치료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아 발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치 하는 경우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치아를 발치 하는 경우
 - 치열교정준비 및 위치이상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치아를 발치 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치 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거나 완전매복되어 발치 하는 경우
 - ※ 부분매복 :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완전매복 : 치관의 2/3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분할술이 필요한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기타 원인으로 발치 하는 경우
 - 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계약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치아를 발치 하는 경우
 - 계약일 이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치아를 발치 하는 경우

Q)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 A)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개인형, 순수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연령	여자연령	
5년 만기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월납
10년 만기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월납
15년 만기	10년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만 19세 ~ 50세	월납
20년 만기	10년납, 전기납	만 19세 ~ 45세	만 19세 ~ 45세	월납

3.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대 1,000만원(1구좌) 이내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
제도성 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1구좌)]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충전치료 보험금 (약관 제11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의 경우 연간 3개 한도, 인레이·온레이 외 충전치료의 경우 연간 5개 한도)	[가입 후 1년 이후]						
		<table border="1"> <tr> <th>충전치료</th> <th>지급금액</th> </tr> <tr> <td>인레이·온레이</td> <td>15만원</td> </tr> <tr> <td>인레이·온레이 외</td> <td>4만원</td> </tr> </table>	충전치료	지급금액	인레이·온레이	15만원	인레이·온레이 외	4만원
		충전치료	지급금액					
		인레이·온레이	15만원					
인레이·온레이 외	4만원							
[가입 후 1년 미만]								
<table border="1"> <tr> <th>충전치료</th> <th>지급금액</th> </tr> <tr> <td>인레이·온레이</td> <td>7.5만원</td> </tr> <tr> <td>인레이·온레이 외</td> <td>2만원</td> </tr> </table>	충전치료	지급금액	인레이·온레이	7.5만원	인레이·온레이 외	2만원		
충전치료	지급금액							
인레이·온레이	7.5만원							
인레이·온레이 외	2만원							
크라운치료 보험금 (약관 제11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	[가입 후 1년 이후] 2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 1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신경치료(치수치료) 보험금 (약관 제11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	[가입 후 1년 이후] 2만원 [가입 후 1년 미만] 1만원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약관 제11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발치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브릿지 (고정성가공의치) 보철치료보험금 (약관 제11조 제5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발치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	[가입 후 2년 이후] 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25만원
틀니 (가철성의치) 보철치료보험금 (약관 제11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틀니(가철성의치)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치아'라 함은 '영구치'를 말하며,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 또는 탈락치)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간니 또는 성치)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3.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4.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로 합니다.
5. '최초'라 함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첫 번째 치료 이후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의 경우,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7.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 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는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 '가입 후 1년(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9.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1.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2.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3. 약관 제9조(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아 발치」의 원인) 제1호에서 제7호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4호에서 제6호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도성 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봅니다.)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임플란트 보철치료 발생률 (질병재해, 연간 3개 한도)	
	남자	여자
20세	0.023580	0.035780
40세	0.084952	0.042919
60세	0.365884	0.238962

구분	무배당 예정 크라운치료 발생률 (영구치, 질병재해, 연간 3개 한도)	
	남자	여자
20세	0.087452	0.145534
40세	0.180148	0.164340
60세	0.441772	0.435944

구분	무배당 예정 인레이 및 온레이 충전치료 발생률 (영구치, 질병재해, 연간 3개 한도)	
	남자	여자
20세	0.192469	0.273689
40세	0.246606	0.347972
60세	0.113027	0.286985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e건강치아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1구좌), 40세 가입,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29,710원)			여자 (월납보험료 : 22,35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89,130	-	0.00%	67,050	-	0.00%
6개월	178,260	-	0.00%	134,100	-	0.00%
9개월	267,390	3,890	1.45%	201,150	-	0.00%
1년	356,520	60,773	17.05%	268,200	20,561	7.67%
2년	713,040	200,186	28.08%	536,400	92,713	17.28%
3년	1,069,560	260,709	24.38%	804,600	124,264	15.44%
4년	1,426,080	298,381	20.92%	1,072,800	145,876	13.60%
5년	1,782,600	315,144	17.68%	1,341,000	160,387	11.96%
6년	2,139,120	311,987	14.58%	1,609,200	168,599	10.48%
7년	2,495,640	287,950	11.54%	1,877,400	168,090	8.95%
8년	2,852,160	216,830	7.60%	2,145,600	133,520	6.22%
9년	3,208,680	120,580	3.76%	2,413,800	78,790	3.26%
10년	3,565,200	-	0.00%	2,682,000	-	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40세, 월납 기준]

○ 남자

보험기간(년)	납입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10	10	81.3%	1,000

○ 여자

보험기간(년)	납입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10	10	79.8%	1,000

상품요약서

무배당 e입원비보험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e입원비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5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7
보험료 산출기초	12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4
보험가격지수	16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e입원비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입원비보험은 고객 니즈에 따라 순수보장형 및 만기환급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연령별 연간 총입원일수 한도'를 설정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온라인 입원비보험입니다.

Q) 무배당 e입원비보험에서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입원비보험에서 입원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입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무배당 e입원비보험에서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입원비보험에서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라 함은 경과 나이 및 입원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연간 총입원일수 한도를 말하며, 경과 나이에 따른 연간 총입원일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과 나이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특정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19세 ~ 39세	15일	15일
40세 ~ 59세	20일	20일
60세 ~ 79세	25일	25일

※ 연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연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경과 나이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1세씩 증가된 피보험자의 나이를 말합니다.

※ 경과 나이 기간 : 경과 나이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연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연도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기간을 말합니다.

Q) 무배당 e입원비보험에서 「입원보장 5대특정 질병·재해」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입원비보험에서 「입원보장 5대특정 질병·재해」라 함은 무배당 e입원비보험의 주계약 약관 [별표5] '입원보장 5대특정 질병·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5대 재해골절, 화상 및 부식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e입원비보험 주계약 약관의 해당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배당 e입원비보험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e입원비보험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 보험료환급 여부 :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피보험자 범위 : 개인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20년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22세 ~ 60세
7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60세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8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 ~ 6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20년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만 19세 ~ 60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7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60세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8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만 19세 ~ 60세
	20년납	만 19세 ~ 6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3.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4.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대 3,000만원(3구좌) 이내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e입원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e입원비보험
제도성 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1구좌)]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약관 제5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계약에서 정한 「입원보장 질병·재해」를 원인으로, 그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다만,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내에서 보장하 며, 당일입원은 보장에서 제외함)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특정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약관 제5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계약에서 정한 「입원보장 5대특정 질병·재해」를 원인으로, 그 특정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다만,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내에서 보장하 며, 당일입원은 보장에서 제외함)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환급금 (약관 제5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이 계약에서 「입원보장 질병·재해」라 함은 이 계약의 '입원보장 신 질병·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4. 이 계약에서 「입원보장 5대특정 질병·재해」라 함은 이 계약의 '입원보장 5대특정 질병·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5대 재해골절, 화상 및 부식을 말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가 발생한 입원에 한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한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이 계약에서 「경과 나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1세씩 증가된 피보험자의 나이를 말합니다.
7. 이 계약에서 「경과 나이 기간」라 함은 경과 나이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연계약해당일부부터 다음 연도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기간을 말합니다.
8. 입원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경과 나이 기간 중 「입원보장 질병·재해」 또는 「입원보장 5대특정 질병·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동일한 경과 나이 기간 동안 2회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9. 특정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질병재해 입원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됩니다. 다만,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질병재해 입원보험금의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를 초과한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당일입원은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원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2일 이상의 입원 시 첫날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1일당 각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는 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경과 나이 기간 중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는 각 입원보험금별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를 최고 한도로 하며, 각 입원보험금별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를 초과한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경과 나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 나이가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경과 나이에 해당하는 각 입원보험금별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경과 나이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특정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19세 ~ 39세	15일	15일
40세 ~ 59세	20일	20일
60세 ~ 79세	25일	25일

12.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3. 만기환급금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1원 미만의 단수(端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제도성 특약

(1)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가.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e입원비보험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신질병·재해 입원적용률 (당일입원 제외, 연간 총입원일수 한도설정)	
	남자	여자
20세 (연간 총입원일수 15일 한도설정)	0.478028	0.372673
40세 (연간 총입원일수 20일 한도설정)	0.730286	0.724826
60세 (연간 총입원일수 25일 한도설정)	1.849457	2.018023

구분	무배당 예정 5대특정 질병·재해 입원적용률 (당일입원 제외, 연간 총입원일수 한도설정)	
	남자	여자
20세 (연간 총입원일수 15일 한도설정)	0.023840	0.012200
40세 (연간 총입원일수 20일 한도설정)	0.084771	0.091035
60세 (연간 총입원일수 25일 한도설정)	0.590342	0.415579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e입원비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3구좌),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15,840원)			여자 (월납보험료 : 15,81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47,520	-	0.0%	47,430	-	0.0%
6개월	95,040	-	0.0%	94,860	-	0.0%
9개월	142,560	-	0.0%	142,290	-	0.0%
1년	190,080	-	0.0%	189,720	-	0.0%
2년	380,160	117,017	30.8%	379,440	115,869	30.5%
3년	570,240	264,626	46.4%	569,160	262,003	46.0%
4년	760,320	413,494	54.4%	758,880	408,557	53.8%
5년	950,400	563,623	59.3%	948,600	555,531	58.6%
10년	1,900,800	1,255,650	66.1%	1,897,200	1,219,350	64.3%
15년	2,851,200	1,899,180	66.6%	2,845,800	1,823,370	64.1%
20년	3,801,600	2,542,830	66.9%	3,794,400	2,460,630	64.8%
30년	3,801,600	1,867,530	49.1%	3,794,400	1,867,770	49.2%
40년	3,801,600	-	0.0%	3,794,400	-	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3구좌),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33,060원)			여자 (월납보험료 : 33,0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99,180	-	0.0%	99,000	-	0.0%
6개월	198,360	-	0.0%	198,000	-	0.0%
9개월	297,540	-	0.0%	297,000	-	0.0%
1년	396,720	53,447	13.5%	396,000	52,440	13.2%
2년	793,440	411,934	51.9%	792,000	409,530	51.7%
3년	1,190,160	777,201	65.3%	1,188,000	772,770	65.0%
4년	1,586,880	1,148,649	72.4%	1,584,000	1,141,410	72.1%
5년	1,983,600	1,526,456	77.0%	1,980,000	1,515,540	76.5%
10년	3,967,200	3,383,070	85.3%	3,960,000	3,341,700	84.4%
15년	5,950,800	5,301,540	89.1%	5,940,000	5,218,710	87.9%
20년	7,934,400	7,384,950	93.1%	7,920,000	7,293,990	92.1%
30년	7,934,400	8,065,860	101.7%	7,920,000	8,054,880	101.7%
40년	7,934,400	7,934,400	100.0%	7,920,000	7,920,000	1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기준 : 40세, 80세만기, 20년납, 월납)

구분	보험기간(년)	납입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여자	
순수보장형	40	20	83.4%	80.0%	3,000
만기환급형	40	20	81.9%	81.7%	3,000

상품요약서

무배당 e수술비보험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e수술비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5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7
보험료 산출기초	11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3
보험가격지수	15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e수술비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수술비보험은 고객 니즈에 따라 순수보장형 및 만기환급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연간 수술횟수 한도'를 설정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온라인 수술비보험입니다.

Q) 무배당 e수술비보험에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e수술비보험에서 수술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수술보장 질병·재해^(주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무배당 e수술비보험의 주계약 약관 [별표5] '1~3종 신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보장 코드^(주2)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1) 수술보장 질병·재해

무배당 e수술비보험의 주계약 약관 [별표4] '수술보장 신 질병·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주2) 수술보장 코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진단명기준환자군(Diagnosis Related Group, DRG)'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 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 진단명기준환자군(DRG)

환자의 주진단명 및 기타진단명, 수술처치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무배당 e수술비보험의 진단명기준환자군(DRG) 분류체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KDRG 버전4.1(2017.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와 진단명**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 진단명**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Q) 무배당 e수술비보험에서 수술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무배당 e수술비보험은 통원 1회당 또는 입원 1회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수술종류별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 내에서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수술종류	지급 금액(수술 1회당)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
1종	보험가입금액의 1%	3회
2종	보험가입금액의 5%	2회
3종	보험가입금액의 10%	1회

※ 연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연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보험연도 : 해당 연도 연계약해당일부턴 다음 연도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Q) 무배당 e수술비보험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e수술비보험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 보험료환급 여부 :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피보험자 범위 : 개인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20년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7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60세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8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 ~ 6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20년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9세 ~ 60세
7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60세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8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 ~ 60세
	60세납	만 19세 ~ 55세
	전기납	만 19세 ~ 60세

3.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4.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최대 3,000만원(3구좌) 이내

※ 다만, 위험등급 및 담보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e수술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e수술비보험
제도성 특약	+ 단체취급특약II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1구좌)]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1~3종 수술보험금 (약관 제5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계약에서 정한 「수술보장 질병·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별표5] '1~3종 신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통원 1회당 또는 입원 1회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수술종류별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 내에서 보장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술 종류</th> <th>지급 금액 (수술 1회당)</th> <th>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종</td> <td>10만원</td> <td>3회</td> </tr> <tr> <td>2종</td> <td>50만원</td> <td>2회</td> </tr> <tr> <td>3종</td> <td>100만원</td> <td>1회</td> </tr> </tbody> </table>	수술 종류	지급 금액 (수술 1회당)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	1종	10만원	3회	2종	50만원	2회	3종	100만원	1회
		수술 종류	지급 금액 (수술 1회당)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										
		1종	10만원	3회										
		2종	50만원	2회										
3종	100만원	1회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														
만기환급금 (약관 제5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이 계약에서 「수술보장 질병·재해」라 함은 이 계약의 '수술보장 신 질병·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가 발생한 수술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이 계약에서 「보험연도」라 함은 해당 연도 연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연도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6. 수술보험금은 통원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수술보장 코드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통원 또는 1회의 입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통원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외과적 우선 순위에 따라 부여되는 하나의 수술보장 코드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동일한 보험연도 중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 횟수는 각 수술종류별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를 최고 한도로 하며, 각 수술종류별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보험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연도가 변경된 날(연계약해당일)의 전일을 퇴원일로 보고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보험연도가 변경된 날 이후의 입원은 보험연도가 변경된 날부터 새로운 입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0. 만기환급금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1원 미만의 단수(端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제도성 특약

(1)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

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가.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

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e수술비보험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신 질병·재해 수술발생률 (1종,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 3회 한도설정)	
	남자	여자
20세	0.055648	0.041247
40세	0.088141	0.101560
60세	0.172662	0.146582

구분	무배당 예정 신 질병·재해 수술발생률 (2종,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 2회 한도설정)	
	남자	여자
20세	0.002837	0.001853
40세	0.006810	0.011435
60세	0.025758	0.023848

구분	무배당 예정 신 질병·재해 수술발생률 (3종,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 1회 한도설정)	
	남자	여자
20세	0.001412	0.000374
40세	0.001223	0.000776
60세	0.004190	0.002682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e수술비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 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1구좌),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5,780원)			여자 (월납보험료 : 5,58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7,340	-	0.0%	16,740	-	0.0%
6개월	34,680	-	0.0%	33,480	-	0.0%
9개월	52,020	-	0.0%	50,220	-	0.0%
1년	69,360	-	0.0%	66,960	-	0.0%
2년	138,720	37,249	26.9%	133,920	27,857	20.8%
3년	208,080	86,913	41.8%	200,880	72,176	35.9%
4년	277,440	136,937	49.4%	267,840	116,674	43.6%
5년	346,800	187,311	54.0%	334,800	161,353	48.2%
10년	693,600	416,890	60.1%	669,600	362,660	54.2%
15년	1,040,400	625,560	60.1%	1,004,400	556,750	55.4%
20년	1,387,200	829,240	59.8%	1,339,200	761,990	56.9%
30년	1,387,200	544,430	39.2%	1,339,200	515,260	38.5%
40년	1,387,200	-	0.0%	1,339,200	-	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1구좌), 40세 가입,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12,060원)			여자 (월납보험료 : 11,64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36,180	-	0.0%	34,920	-	0.0%
6개월	72,360	-	0.0%	69,840	-	0.0%
9개월	108,540	-	0.0%	104,760	-	0.0%
1년	144,720	17,867	12.3%	139,680	12,509	9.0%
2년	289,440	144,754	50.0%	279,360	131,307	47.0%
3년	434,160	273,821	63.1%	419,040	252,216	60.2%
4년	578,880	405,049	70.0%	558,720	375,054	67.1%
5년	723,600	538,476	74.4%	698,400	499,873	71.6%
10년	1,447,200	1,192,910	82.4%	1,396,800	1,111,190	79.6%
15년	2,170,800	1,866,690	86.0%	2,095,200	1,754,340	83.7%
20년	2,894,400	2,595,610	89.7%	2,793,600	2,466,850	88.3%
30년	2,894,400	2,805,530	96.9%	2,793,600	2,697,620	96.6%
40년	2,894,400	2,894,400	100.0%	2,793,600	2,793,600	1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기준 : 40세, 80세만기, 20년납, 월납)

구분	보험기간(년)	납입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여자	
순수보장형	40	20	83.1%	80.1%	1,000
만기환급형	40	20	82.0%	81.9%	1,000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5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7
보험료 산출기초	14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6
보험가격지수	19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은 어린이 전용보험으로 고객 니즈에 따라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으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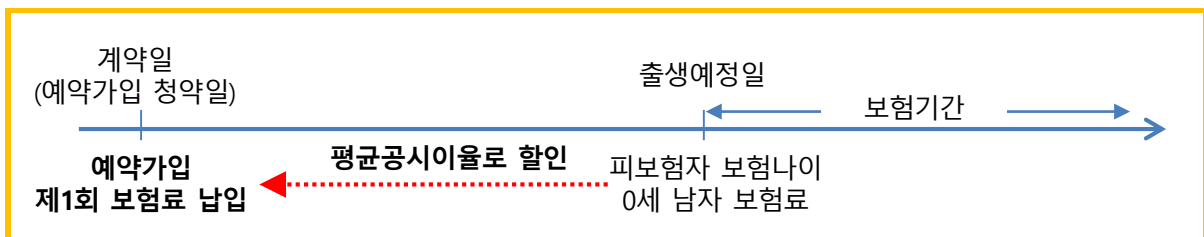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의 가입나이의 제한은 없나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태아부터 최고 1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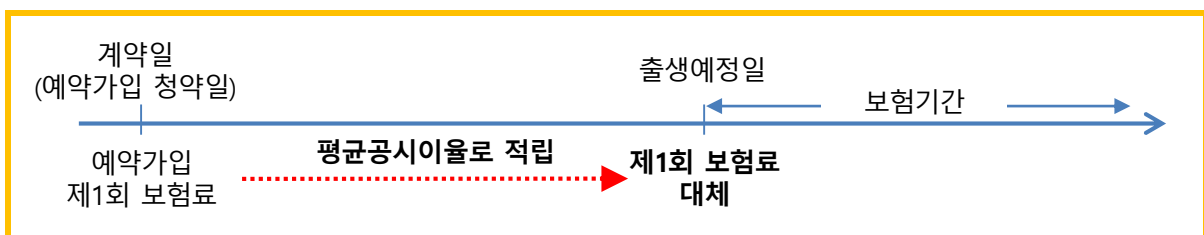
Q)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 시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은 산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예약가입 가능합니다.

-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에 대한 예약가입 제1회 보험료는 '남자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출생예정일부터 예약가입 시점(보험료 납입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예약가입 제1회 보험료는 출생예정일에 이 계약의 보장 개시를 위해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출생예정일에 대체 납입됩니다.



- 출생 후 태아 등재 시 출생예정일은 출생일과 동일한 날짜로 변경됩니다.
 - 출생 후 태아 등재 시 피보험자의 성별이 여아일 경우 또는 예약가입 청약 시의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 시에는 무배당 주산기질환수술특약과 무배당 주산기질환입원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특약은 체결시점부터 보장 개시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출생전) 약관 및 해당 특약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 주요10대 질병」은 무엇인가요?

- A)** 「어린이 주요10대 질병」이라 함은 폐렴, 창자감염질환, 특정 감염병, 탈장 및 장폐색, 수막염, 충수염, VDT 증후군 관련,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주계약 약관 [별표 13] '어린이 주요 10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대체하며,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가산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출생전] [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출생후] [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 주기	
주 계 약	(무)라이프플래닛 e플러스 어린이보험Ⅱ [출생전/출생후] [순수보장형]	10년 만기	일시납	0세(태아포함) ~ 15세	일시납, 월납, 연납
			전기납	5세 ~ 15세	
		20년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0세	
			전기납	5세 ~ 10세	
		30세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5세	
			20년납	0세(태아포함) ~ 10세	
	(무)라이프플래닛 e플러스 어린이보험Ⅱ [출생전/출생후] [만기환급형]	10년 만기	일시납	0세(태아포함) ~ 15세	일시납, 월납, 연납
			전기납	5세 ~ 15세	
		20년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0세	
			전기납	5세 ~ 10세	
		30세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5세	
			20년납	0세(태아포함) ~ 10세	
전기납	0세(태아포함) ~ 15세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 주기
특 약	(무)주산기질환 수술특약 (무)주산기질환 입원특약	1년 만기	일시납	태아	일시납

- (무)주산기질환수술특약 및 (무)주산기질환입원특약의 경우 출생전 가입(태아 가입)에 한하여 의무부가를 하며, 출생 후 가입 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주계약의 납입주기와 관계 없이 일시납으로 운영합니다.

2. 가입한도

구분		가입한도
주계약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1,000만원 이내
특약	(무)주산기질환수술특약 (무)주산기질환입원특약	주계약 가입금액과 동일

3.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출생전)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출생후)
특약	출생 전 가입 시 의무부가 특약	+ 무배당 주산기질환수술특약 + 무배당 주산기질환입원특약
	제도성 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치아파절 제외)	재해골절 1회당 3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혈병 및 골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1억원
일반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0만원
갑상선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만원
제자리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만원
질병 및 재해 입원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그 질병 및 재 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4일 이상 입원일수 1 일당 2만원
어린이 주요 10대질병 입원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어린이 주요 10대질병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어린이 주요 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4일 이상 입원일수 1 일당 2만원
<p>어린이 주요 10대질병 : 폐렴, 창자감염질환, 특정 감염병, 탈장 및 장폐색, 수막염, 충수염, VDT 증후군 관련,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 해당 약관의 [별표 13] '어린이 주요 10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세부 사항 은 해당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1~5종 수술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해당 약관의 [별표4]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출생전) 약관의 제30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및 제35조(보험료 변경 및 정산) 제1항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출생후) 약관의 제29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만기환급금은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만기환급금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1원 미만의 단수(端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5.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의 경우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 및 일반암 진단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 및 골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그 당시의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에서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 당시의 일반암 진단비를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백혈병 및 골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일반암 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8. 입원비의 지급한도는 1회 입원당 120일로 합니다.
9. 입원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어린이

주요 10대질병 입원비 또는 질병 및 재해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 어린이 주요 10대질병 입원비는 질병 및 재해 입원비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11. 다음 사항은 질병 및 재해 입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①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입원한 경우
 - ② 선천적인 장애로 입원한 경우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경우
 - ④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⑤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입원한 경우
- 12. 1~5종 수술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3.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나. 특약

(1) 무배당 주산기질환수술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주산기질환 수술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산기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주)

「주산기질환」이라 함은 해당 특약 약관의 [별표2]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배당 주산기질환입원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주산기질환 입원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주)

「주산기질환」이라 함은 해당 특약 약관의 [별표2]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도성 특약

(1)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가.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시)]

- 계약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여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계약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 후 가입 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험료 환급]

위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질병 및 재해 입원적용률	
	남자	여자
0세	2.128938	1.772568
5세	0.519002	0.508605
10세	0.258035	0.221370

구분	무배당 예정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발생률	
	남자	여자
0세	0.004152	0.001965
5세	0.035808	0.024626
10세	0.081913	0.035694

구분	무배당 예정 암발생률(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남자	여자
0세	0.000430	0.000401
5세	0.000181	0.000163
10세	0.000140	0.000104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 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출생전]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태아(0세) 가입, 30세(30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13,5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3개월	40,500	-	0.0%
6개월	81,000	-	0.0%
9개월	121,500	-	0.0%
1년	162,000	-	0.0%
2년	324,000	66,950	20.7%
3년	486,000	151,130	31.1%
4년	648,000	247,620	38.2%
5년	810,000	354,340	43.7%
10년	1,620,000	948,570	58.6%
15년	1,620,000	792,620	48.9%
20년	1,620,000	598,120	36.9%
25년	1,620,000	329,510	20.3%
30년	1,620,000	-	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태아(0세) 가입, 30세(30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32,46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3개월	97,380	-	0.0%
6개월	194,760	4,774	2.5%
9개월	292,140	74,350	25.5%
1년	389,520	143,927	36.9%
2년	779,040	442,724	56.8%
3년	1,168,560	760,811	65.1%
4년	1,558,080	1,096,729	70.4%
5년	1,947,600	1,448,516	74.4%
10년	3,895,200	3,325,700	85.4%
15년	3,895,200	3,482,120	89.4%
20년	3,895,200	3,641,050	93.5%
25년	3,895,200	3,772,300	96.8%
30년	3,895,200	3,895,200	1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Ⅱ [출생후]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5세 가입, 30세(25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11,140원)			여자 (월납보험료 : 8,10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33,420	-	0.0%	24,300	-	0.0%
6개월	66,840	-	0.0%	48,600	-	0.0%
9개월	100,260	7,756	7.7%	72,900	-	0.0%
1년	133,680	27,524	20.6%	97,200	8,689	8.9%
2년	267,360	112,219	42.0%	194,400	65,947	33.9%
3년	401,040	201,603	50.3%	291,600	128,156	43.9%
4년	534,720	291,177	54.5%	388,800	193,604	49.8%
5년	668,400	380,111	56.9%	486,000	261,243	53.8%
10년	1,336,800	792,870	59.3%	972,000	604,580	62.2%
15년	1,336,800	598,320	44.8%	972,000	505,540	52.0%
20년	1,336,800	329,630	24.7%	972,000	330,550	34.0%
25년	1,336,800	-	0.0%	972,000	-	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5세 가입, 30세(25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33,250원)			여자 (월납보험료 : 24,18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99,750	-	0.0%	72,540	-	0.0%
6개월	199,500	23,867	12.0%	145,080	9,264	6.4%
9개월	299,250	108,511	36.3%	217,620	69,226	31.8%
1년	399,000	193,154	48.4%	290,160	129,189	44.5%
2년	798,000	543,469	68.1%	580,320	379,557	65.4%
3년	1,197,000	904,723	75.6%	870,480	639,446	73.5%
4년	1,596,000	1,272,587	79.7%	1,160,640	907,244	78.2%
5년	1,995,000	1,646,391	82.5%	1,450,800	1,182,033	81.5%
10년	3,990,000	3,547,820	88.9%	2,901,600	2,608,030	89.9%
15년	3,990,000	3,715,300	93.1%	2,901,600	2,772,260	95.5%
20년	3,990,000	3,856,210	96.6%	2,901,600	2,895,150	99.8%
25년	3,990,000	3,990,000	100.0%	2,901,600	2,901,600	1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II [출생전]

(기준 : 0세, 30세(30년)만기, 10년납, 월납)

구분		보험기간(년)	납입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태아 (남자)	순수보장형	30	10	78.6%	1,000
	만기환급형	30	10	78.5%	1,000

-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II [출생후]

(기준 : 5세, 30세(25년)만기, 10년납, 월납)

구분		보험기간(년)	납입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순수보장형	25	10	79.3%	1,000
	만기환급형	25	10	77.7%	1,000
여자	순수보장형	25	10	78.8%	1,000
	만기환급형	25	10	75.4%	1,000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6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8
보험료 산출기초	16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7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8
보험가격지수	21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은 고객 니즈에 따라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암진단, 재해장해,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입원, 수술, 특정법정감염병진단, 깃스치료(부목치료제외) 및 화상 위험 등을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 어린이보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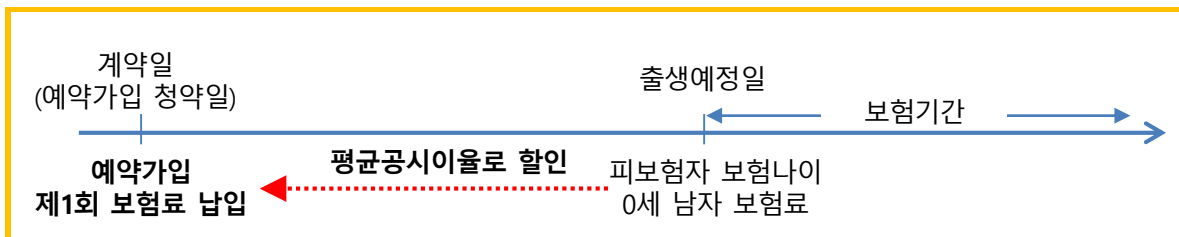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의 가입나이의 제한은 없나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태아부터 최고 1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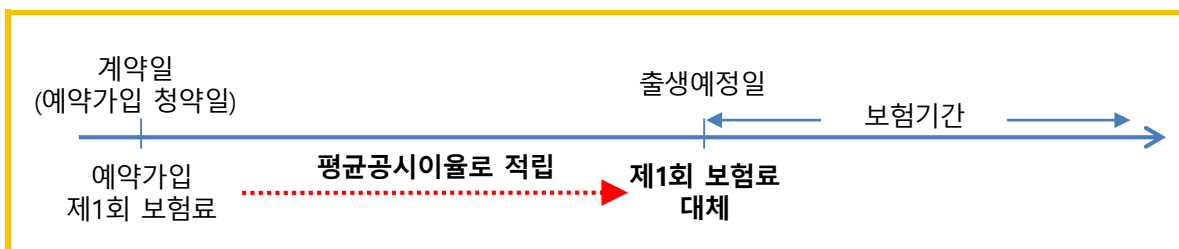
Q)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 시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은 산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예약가입 가능합니다.

-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에 대한 예약가입 제1회 보험료는 '남자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출생예정일부터 예약가입 시점(보험료 납입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예약가입 제1회 보험료는 출생예정일에 이 계약의 보장 개시를 위해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출생예정일에 대체 납입됩니다.



- 출생 후 태아 등재 시 출생예정일은 출생일과 동일한 날짜로 변경됩니다.
- 출생 후 태아 등재 시 피보험자의 성별이 여아일 경우 또는 예약가입 청약 시의 출생예정

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 시에는 무배당 주산기질환수술특약과 무배당 주산기질환입원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특약은 체결시점부터 보장 개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출생전) 약관 및 해당 특약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은 선납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의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영수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하며,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가산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의 다자녀 보험료 할인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의 다자녀 보험료 할인은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인 이상^{주1)}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증빙서류^{주2)}를 첨부하여 다자녀 보험료 할인 신청(또는 변경신청)을 하고, 회사는 다자녀 보험료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시점^{주3)} 이후 도래하는 영업보험료^{주4)}부터 다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형제자매 수	할인율
1인	해당 없음
2인	영업보험료의 3.0%
3인 이상	영업보험료의 5.0%

주1) '형제자매 2인 이상'에는 피보험자 본인도 포함되며, 보험기간 중 출산 등으로 형제자매가 추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2) '증빙서류'란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주3) '다자녀 보험료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시점'은 증빙서류의 형제자매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 '이후 영업보험료'에는 초회(제1회) 영업보험료(일시납 보험료 포함)는 포함하지 않는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출생전] [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출생후] [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 주기
주 계 약	(무)라이프플래닛 e플러스어린이 종합보험 [출생전/출생후] [순수보장형]	10년 만기	일시납	0세(태아포함) ~ 15세	일시납, 월납
			전기납	5세 ~ 15세	
		20년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5세	
			전기납	1세 ~ 15세	
		30세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5세	
			20년납	0세(태아포함) ~ 10세	
			전기납	0세(태아포함) ~ 15세	
		80세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30세납	0세(태아포함) ~ 15세	
		90세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30세납	0세(태아포함) ~ 15세	
		100세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30세납	0세(태아포함) ~ 15세	
	(무)라이프플래닛 e플러스어린이 종합보험 [출생전/출생후] [만기환급형]	20년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5세	일시납, 월납
			전기납	0세(태아포함) ~ 15세	
		30세 만기	일시납, 10년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5세	
			20년납	0세(태아포함) ~ 10세	
전기납	0세(태아포함) ~ 15세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 주기
특 약	(무)주산기질환 수술특약 (무)주산기질환 입원특약	1년 만기	일시납	태아	일시납

- (무)주산기질환수술특약 및 (무)주산기질환입원특약의 경우 출생전 가입(태아 가입)에 한하여 의무부가를 하며, 출생 후 가입 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주계약의 납입주기와 관계 없이 일시납으로 운영합니다.

3. 가입한도

구분		가입한도
주계약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1,000만원 이내
특약	(무)주산기질환수술특약 (무)주산기질환입원특약	주계약 가입금액과 동일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출생전)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출생후)
특약	출생 전 가입 시 의무부가 특약	+ 무배당 주산기질환수술특약 + 무배당 주산기질환입원특약
	제도성 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만기환급금 (약관 제19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19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19조 제3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4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치아파절 제외)	재해골절 1회당 30만원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5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혈병 및 골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1억원
일반암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6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0만원
갑상선암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7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8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9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만원
제자리암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10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500만원
질병 및 재해 입원비 (1일이상, 120일 한도) (약관 제19조 제1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그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질병 및 재해 상급종합병원입원비 (1일이상, 120일 한도) (약관 제19조 제1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그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 및 재해 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60일 한도) (약관 제19조 제13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그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약관 제19조 제14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내원 1회당 2만원
1~5종 수술비 (약관 제19조 제15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약관 제19조 제16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1,000만원
특정 법정감염병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17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법정감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진단 1회당 30만원
깁스(부목치료 제외) 치료비 (약관 제19조 제18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 제외)	깁스치료 1회당 10만원
화상 및 부식 (심재성2도이상) 진단비 (약관 제19조 제19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화상 및 부식(심재성2도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연간 1회한)	10만원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해당 약관의 [별표4]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출생전) 약관의 제37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및 제42조(보험료 변경 및 정산) 제1항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무배당 라이

프플래닛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출생후) 약관의 제36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만기환급금은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만기환급금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1원 미만의 단수(端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5.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의 경우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 및 일반암 진단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 및 골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그 당시의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에서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 당시의 일반암 진단비를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백혈병 및 골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일반암 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8. 입원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 및 재해 입원비(1일이상, 120일 한도), 질병 및 재해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 120일 한도) 또는 질병 및 재해 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60일 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경우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1~5종 수술비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5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1.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의 경우 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합니다.
12. 깁스(부목치료 제외)치료비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부목치료 제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3.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나. 특약

(1) 무배당 주산기질환수술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주산기질환 수술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주)

「주산기질환」이라 함은 해당 특약 약관의 [별표2]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배당 주산기질환입원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주산기질환 입원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주)

「주산기질환」이라 함은 해당 특약 약관의 [별표2]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도성 특약

(1)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가.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출생 전 가입(태아 가입)시]

- 계약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여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계약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 후 가입 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험료 환급]

위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해당 특약보험료를 포함하며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해당 특약보험료를 포함하며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주계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질병 및 재해 입원적용률(1일이상 120일한도)	
	남자	여자
0세	3.570487	2.951090
5세	1.118750	1.084778
10세	0.501105	0.424093

구분	무배당 예정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발생률	
	남자	여자
0세	0.004152	0.001965
5세	0.035808	0.024626
10세	0.081913	0.035694

구분	무배당 예정 암발생률(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남자	여자
0세	0.000430	0.000401
5세	0.000181	0.000163
10세	0.000140	0.000104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출생전]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태아(0세) 가입, 30세(30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21,68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3개월	65,040	-	0.0%
6개월	130,080	-	0.0%
9개월	195,120	-	0.0%
1년	260,160	-	0.0%
2년	520,320	5,049	1.0%
3년	780,480	109,663	14.1%
4년	1,040,640	239,827	23.0%
5년	1,300,800	389,401	29.9%
10년	2,601,600	1,262,640	48.5%
15년	2,601,600	1,051,240	40.4%
20년	2,601,600	792,160	30.4%
25년	2,601,600	425,840	16.4%
30년	2,601,600	-	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태아(0세) 가입, 30세(30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53,85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3개월	161,550	-	0.0%
6개월	323,100	-	0.0%
9개월	484,650	77,754	16.0%
1년	646,200	172,829	26.7%
2년	1,292,400	627,307	48.5%
3년	1,938,600	1,120,216	57.8%
4년	2,584,800	1,647,804	63.7%
5년	3,231,000	2,204,183	68.2%
10년	6,462,000	5,206,210	80.6%
15년	6,462,000	5,513,030	85.3%
20년	6,462,000	5,840,270	90.4%
25년	6,462,000	6,137,300	95.0%
30년	6,462,000	6,462,000	100.0%

- ※ 상기 금액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이후 해지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 출생예정일 이전에 청약철회 시 예약가입 제1회 보험료를 청약철회 신청일까지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하여 돌려 드리며, 출생예정일 이후 태아가 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무)라이프플래닛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출생후]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5세 가입, 30세(25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16,130원)			여자 (월납보험료 : 12,43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48,390	-	0.0%	37,290	-	0.0%
6개월	96,780	-	0.0%	74,580	-	0.0%
9개월	145,170	6,887	4.7%	111,870	-	0.0%
1년	193,560	30,563	15.8%	149,160	11,336	7.6%
2년	387,120	134,686	34.8%	298,320	85,931	28.8%
3년	580,680	245,829	42.3%	447,480	167,727	37.5%
4년	774,240	360,651	46.6%	596,640	256,003	42.9%
5년	967,800	477,544	49.3%	745,800	348,909	46.8%
10년	1,935,600	1,051,490	54.3%	1,491,600	839,220	56.3%
15년	1,935,600	792,360	40.9%	1,491,600	692,150	46.4%
20년	1,935,600	425,960	22.0%	1,491,600	442,820	29.7%
25년	1,935,600	-	0.0%	1,491,600	-	0.0%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5세 가입, 30세(25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	남자 (월납보험료 : 50,850원)			여자 (월납보험료 : 39,140원)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납입보험료 (C)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C)
3개월	152,550	-	0.0%	117,420	-	0.0%
6개월	305,100	34,619	11.3%	234,840	18,481	7.9%
9개월	457,650	157,589	34.4%	352,260	111,096	31.5%
1년	610,200	280,559	46.0%	469,680	203,711	43.4%
2년	1,220,400	791,437	64.9%	939,360	591,333	63.0%
3년	1,830,600	1,318,896	72.0%	1,409,040	993,524	70.5%
4년	2,440,800	1,859,864	76.2%	1,878,720	1,409,776	75.0%
5년	3,051,000	2,412,943	79.1%	2,348,400	1,838,417	78.3%
10년	6,102,000	5,264,710	86.3%	4,696,800	4,082,200	86.9%
15년	6,102,000	5,559,230	91.1%	4,696,800	4,361,280	92.9%
20년	6,102,000	5,819,240	95.4%	4,696,800	4,594,110	97.8%
25년	6,102,000	6,102,000	100.0%	4,696,800	4,696,800	1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주계약]

-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출생전]

(기준 : 0세, 30세(30년)만기, 10년납, 월납)

구분		보험기간(년)	납입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태아 (남자)	순수보장형	30	10	81.5%	1,000
	만기환급형	30	10	80.1%	1,000

-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종합보험 [출생후]

(기준 : 5세, 30세(25년)만기, 10년납, 월납)

구분		보험기간(년)	납입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남자	순수보장형	25	10	82.1%	1,000
	만기환급형	25	10	79.0%	1,000
여자	순수보장형	25	10	81.0%	1,000
	만기환급형	25	10	76.4%	1,000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6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8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3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6
모집수수료율	21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22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은 자녀에게 필요한 초·중·고 교육자금, 대학교 등 록금, 어학연수/유학준비자금, 사회진출자금 등을 자유롭게 설계 할 수 있으며, 목표한 교육 자기에 따라 최적의 보험료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금리연동형 저축성 어린이 보험입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 주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 주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월 3만원(5년납의 경우 5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교육자금 인출 금액의 합계액

○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

=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 × 200% + 교육자금 인출 금액의 합계액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의 피보험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가입자녀)와 종피보험자(가입부모)로 구성되며, 다음에서 정한 사람으로 합니다.

- 가입자녀 : 보험증권상에 가입자녀로 등록된 자

- 가입부모 : 가입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부모나 직계존속 중 1명으로 보

험증권상에 가입부모로 등록된 자

※ 계약 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및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Ⅱ 주계약의 교육자금 인출은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간(보험 연도 기준) 총 12회까지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교육자금으로 인출(이하 '교육자금 인출'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자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이하 "인출 수수료"라 합니다)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간(보험 연도 기준) 1회 인출부터 4회 인출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② 교육자금을 인출할 경우, 1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총 교육자금 인출 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교육자금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④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교육자금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1,200%와 향후 보장계약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⑤ 교육자금 인출 시 교육자금 인출 금액 및 인출 금액의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되므로, 교육자금 인출 이후에는 해약환급금과 만기교육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Ⅱ 주계약의 '교육자금 인출 알림e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 ①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Ⅱ 주계약의 '교육자금 인출 알림e서비스'는 보험회사가 교육자금 인출 예정일 7일 이전에 교육자금 인출 예정일, 교육자금 인출 예정금액, 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보험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보험료 납입 한도 등), 계약자적립액에 관한 사항, 교육자금 인출에 관한 사항(교육자금 인출 금액, 인출 제한금액 등) 등을 보

험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교육자금 인출 알림e서비스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한 보험 계약에 한하여 제공되며, 보험계약자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교육자금 인출 알림e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어의 정의]

- 교육자금 인출 예정일 : 보험기간 중 교육자금 인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날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종피보험자(가입자녀)의 나이에 해당하는 연계약해당일
- 교육자금 인출 예정금액 : 보험계약자가 교육자금 인출 예정일에 교육자금으로 인출하기를 희망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설정한 금액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에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은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II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신청 당시 종피보험자(가입부모)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상인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생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다만, 신청 당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Q)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종피보험자(가입부모)가 사망 또는 50% 이상 장애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고 이후부터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대신 납입하여 종피보험자(가입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목표했던 교육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특약입니다.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및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적립형(월납)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① 주계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10년 ~ 20년만기 (1년 단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0세 ~ 15세	20세 ~ 60세	월납
21년 ~ 30년만기 (1년 단위)			20세 ~ (80-보험기간)세	

② 보험료납입면제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주계약과 동일	주계약과 동일	월납

3. 가입한도(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월 3만원(5년납의 경우 5만원) 이상
-------	---

추가납입보험료	<p>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p> <p>√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교육자금 인출 금액의 합계액</p> <p>√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 =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 × 200% + 교육자금 인출 금액의 합계액</p>
----------------	---

※ 가입한도 등 계약 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에듀케어저축보험Ⅱ의 경우 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는 '가입자녀', '종피보험자'는 '가입부모'라 하고,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에듀케어저축보험Ⅱ
선택특약	+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제도성 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만기교육자금 (약관 제3조 제1호)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입자녀 또는 가입 부모 중 1명 이상 살아 있을 경우	만기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가입자녀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3조 제2호)	가입자녀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가입자녀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3조 제3호)	가입자녀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가입부모 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4호)	가입부모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250%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 수익 등 경영 환경을 고려한 조정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 (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로 합니다.)
3. 교통재해는 이 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말하며,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4. 보험기간 중 가입자녀와 가입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녀와 가입부모가 모두 사망하게 된 때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5. 만기교육자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만기교육자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선택특약

√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료 납입면제 (약관 제3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가입부모가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음 회부터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주계약에 추가된 특약 보험료의 납입 면제

□ 제도성 특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전환 신청 당시 종피보험자(가입부모)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험계약일부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상인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생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적용 기초율 : 연금전환 당시의 기초율 적용

-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 : 전환 전 계약의 전환일시금 (최저보험료 500만원)

- 종피보험자(가입부모) 가입나이 : 만 55세 ~ 75세

- 연금지급 형태 : 종신연금형(10년(10회) 보증)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전환일 현재의 피보험자 나이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이 계약의 선택특약인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주계약/특약)에서 정한 보

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Ⅱ 주계약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이며,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Ⅱ의 선택특약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Q)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Ⅱ 주계약은 운용자산이익률^{주1)}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주2)}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 복리 2.20%(세전)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경됩니다.

주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과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 등을 고려하여 산출

주2)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공시이율의 적용

이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해당 월의 1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Q)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립부분 적용이율의 최저 한도로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Ⅱ 주계약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 (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입니다.

4.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3~100% 교통재해 장해률	
	남자	여자
0세	0.000006	0.000003
5세	0.000006	0.000003
10세	0.000006	0.000003

구분	무배당 예정 3~100% 재해 장해률	
	남자	여자
0세	0.000018	0.000008
5세	0.000018	0.000008
10세	0.000018	0.000008

구분	무배당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310	0.000180
40세	0.000780	0.000470
60세	0.004550	0.001730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은 해약공제액이 없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주계약 기본보험료 30만원, 가입부모 남자 35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저보증이율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가입자녀 남자 0세				가입자녀 여자 0세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52	94.7%	852	94.7%	852	94.7%	852	94.7%
6개월	1,800	1,706	94.8%	1,706	94.8%	1,706	94.8%	1,706	94.8%
9개월	2,700	2,564	95.0%	2,564	95.0%	2,564	95.0%	2,564	95.0%
1년	3,600	3,424	95.1%	3,424	95.1%	3,424	95.1%	3,424	95.1%
2년	7,200	6,891	95.7%	6,891	95.7%	6,891	95.7%	6,891	95.7%
3년	10,800	10,401	96.3%	10,401	96.3%	10,402	96.3%	10,402	96.3%
4년	14,400	13,956	96.9%	13,956	96.9%	13,956	96.9%	13,956	96.9%
5년	18,000	17,554	97.5%	17,554	97.5%	17,555	97.5%	17,555	97.5%
6년	21,600	21,149	97.9%	21,149	97.9%	21,150	97.9%	21,150	97.9%
7년	25,200	24,780	98.3%	24,780	98.3%	24,781	98.3%	24,781	98.3%
8년	28,800	28,520	99.0%	28,520	99.0%	28,521	99.0%	28,521	99.0%
9년	32,400	32,297	99.7%	32,297	99.7%	32,298	99.7%	32,298	99.7%
10년	36,000	36,112	100.3%	36,112	100.3%	36,113	100.3%	36,113	100.3%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가입자녀 남자 0세				가입자녀 여자 0세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53	94.8%	853	94.8%	853	94.8%	853	94.8%
6개월	1,800	1,711	95.1%	1,711	95.1%	1,711	95.1%	1,711	95.1%
9개월	2,700	2,574	95.3%	2,574	95.3%	2,574	95.4%	2,574	95.4%
1년	3,600	3,441	95.6%	3,441	95.6%	3,441	95.6%	3,441	95.6%
2년	7,200	6,959	96.7%	6,959	96.7%	6,959	96.7%	6,959	96.7%
3년	10,800	10,553	97.7%	10,553	97.7%	10,554	97.7%	10,554	97.7%
4년	14,400	14,227	98.8%	14,227	98.8%	14,228	98.8%	14,228	98.8%
5년	18,000	17,982	99.9%	17,982	99.9%	17,983	99.9%	17,983	99.9%
6년	21,600	21,819	101.0%	21,819	101.0%	21,820	101.0%	21,820	101.0%
7년	25,200	25,741	102.2%	25,741	102.2%	25,742	102.2%	25,742	102.2%
8년	28,800	29,821	103.6%	29,821	103.6%	29,823	103.6%	29,823	103.6%
9년	32,400	33,992	104.9%	33,992	104.9%	33,993	104.9%	33,993	104.9%
10년	36,000	38,254	106.3%	38,254	106.3%	38,255	106.3%	38,255	106.3%

[공시이율(2023.8월 현재 2.20%)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가입자녀 남자 0세				가입자녀 여자 0세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53	94.8%	853	94.8%	853	94.8%	853	94.8%
6개월	1,800	1,711	95.1%	1,711	95.1%	1,711	95.1%	1,711	95.1%
9개월	2,700	2,574	95.3%	2,574	95.3%	2,574	95.4%	2,574	95.4%
1년	3,600	3,441	95.6%	3,441	95.6%	3,441	95.6%	3,441	95.6%
2년	7,200	6,959	96.7%	6,959	96.7%	6,959	96.7%	6,959	96.7%
3년	10,800	10,553	97.7%	10,553	97.7%	10,554	97.7%	10,554	97.7%
4년	14,400	14,227	98.8%	14,227	98.8%	14,228	98.8%	14,228	98.8%
5년	18,000	17,982	99.9%	17,982	99.9%	17,983	99.9%	17,983	99.9%
6년	21,600	21,819	101.0%	21,819	101.0%	21,820	101.0%	21,820	101.0%
7년	25,200	25,741	102.2%	25,741	102.2%	25,742	102.2%	25,742	102.2%
8년	28,800	29,821	103.6%	29,821	103.6%	29,823	103.6%	29,823	103.6%
9년	32,400	33,992	104.9%	33,992	104.9%	33,993	104.9%	33,993	104.9%
10년	36,000	38,254	106.3%	38,254	106.3%	38,255	106.3%	38,255	106.3%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3년 8월 현재 저축(무배당)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연 복리 2.20%(세전)가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해당 상품은 매월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차감 후 경과 일수로 부리됩니다.

- ※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를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을 경우 또는 교육자금 인출이나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의 실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상기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Ⅱ은 해약공제액(미상각신계약비)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이 동일합니다.
-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이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모집수수료율

Q) 모집수수료란?

A)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예시 >

(기준 : 주계약 기본보험료 30만원, 가입자녀 남자 0세, 가입부모 남자 35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CM채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A(신용카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18%	0.17%	0.17%	0.17%	0.16%	0.16%	0.15%	1.16%

※ 1차년도~7차년도 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60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주피보험자(가입자녀) 남자 0세, 종피보험자(가입부모) 남자 35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수수료 합산표]1

경과기간	1~7년	8년 이후 납입기간 중
보험관계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5.518% ~ 5.524%	기본보험료의 3.526% ~ 3.529%

※ 수수료 합산표는 경과기간별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나누어 산출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2.0% (6,000원) 7년 초과 : 없음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의 3.5% (10,500원) 납입기간 이후 : 해당사항 없음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177% ~ 0.0287% (53원 ~ 86원)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 시	해당 사항 없음.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 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교육자금 인출 수수료	교육자금 인출에 따른 비용	교육자금 인출 시	1회당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전에 교육자금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 금액 이내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으로 합니다.

※ 교육자금 인출 수수료는 연간 1회 인출부터 4회 인출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 (유니버설)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기초 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1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4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9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21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21
모집수수료율	26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27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은 가입 후 5년(만 55세) 이후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며, 소액의 자금(최저 월납보험료 3만원)으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는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월 3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금액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보험료 납입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이며, 연간 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 계약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간 한도 및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연간 한도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600만원	납입보험료의 15%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 (총급여액 5천500만원 초과)	600만원	납입보험료의 12%

【연금계좌세액공제 예시】

40세인 A씨(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는 연금저축을 매년 600만원 납입(퇴직연금 납입액은 없음)

구분	금액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간 한도	600만원
공제 대상금액	600만원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15% + 1.5%)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99만원 (600만원 x 16.5%)

※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 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 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며,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 수령]

연금 수령 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 인출(제4항 제3호)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 수령 요건]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수령

[연금 수령 한도]

연금 한도액

$$= \text{과세기간 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 총액} / (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함.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 또는 다른 소득과 분리한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

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1항 제2호】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계약자의 해외 이주.
-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 수령 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 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

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에서 제4항을 준용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 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의 경우 잔여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또는 제21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연금지급 형태를 복수(2가지 이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형의 잔여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 의료비를 인출하며, 확정연금형의 계약자적립액이 없을 경우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적립액에서 의료비를 인출한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소하거나 일정기간(종신연금형의 경우 의료비 인출로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종료 시점까지)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확정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이 소진되면 확정연금형의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⑩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보험료는 어떻게 납입해야 하나요?

A)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을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라 하며,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1회 기본보험료만을 납입하여 부활(효력 회복)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이내
: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의 납입 한도 내에서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보험료 납입유예'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보험료 납입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이하 '납입유예 가능 시점'이라 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연장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포함)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시점은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시점이 약정된 연금지급 개시 시점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지급 개시 시점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은 연 단위로 자동 연기됩니다. 또한, 연기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시점이 보험계약자가 설정한 목표 납입기간(월수) 종료 시점 이후인 경우 목표 납입기간(월수)은 연기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시점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연기된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지급 개시 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보험계약자는 매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 중 실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만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재변경 됩니다.
- ⑥ 보험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며, 보험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⑦ 보험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계약관리비용(보험료 의무납입기간 후 유지관련비용)]를 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부활(효력 회복)은 다른 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활(효력 회복)을 승낙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정한 금액과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이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하지 않은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1.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기본보험료

나.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까지 연체된 기본보험료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합계액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2.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합계액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을 납입하여 부활(효력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③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을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 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

후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포함) 만큼 연기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 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 회복)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 대체보험료[계약관리비용(보험료 의무납입기간 후 유지관련비용)]를 월계약해당일에 계약 자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시점이 약정된 연금지급 개시 시점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지급 개시 시점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은 연 단위로 자동 연기됩니다. 또한, 연기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시점이 보험계약자가 설정한 목표 납입기간(월수) 종료 시점 이후인 경우 목표 납입기간(월수)은 연기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시점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로 연기된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 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지급 개시 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계약의 이전은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①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 취급자)의 연금저축
- ② 보험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 취급자)의 개인형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에서 보험회사 소정의 계약이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 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목표 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목표 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목표 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라 함은 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보험계약자가 설정한 목표 연금액 이상이 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목표 납입기간(월수) 종료 시점 이후부터 연금지급 개시일까지 1년에 1회(목표 납입기간(월수) 종료 시점을 포함합니다.) 이상 다음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1. 장래 연금 예상액에 관한 사항
 - 2. 장래 연금 예상액이 목표 연금액에 미달한 경우 장래 연금 예상액이 목표 연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납입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보험료 및 목표 납입기간(월수)의 연장기간 등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보험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보험료 납입 한도 등)
- ③ 보험계약자는 목표 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 목표 연금액 : 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설정한 금액
- 목표 납입기간(월수) : 이 보험계약의 목표 연금액 달성을 위해 최소 60개월(5년, 60회 납입)에서 최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월 단위로 설정한 기간(월수)
- 장래 연금 예상액 :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액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b연금저축보험의 '장기유지보너스'는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아래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
60회차 납입일 ^(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1.0%

(주) 60회차 기본보험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60회차 월계약해당일을 60회차 납입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및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종신연금형(10년(10회)보증 / 20년(20회)보증 /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보증)
 확정연금형(10년(10회)확정 / 20년(20회)확정 /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확정)

-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지급 형태를 복수(2가지 이내)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 형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 비율(5% 단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지급 형태 및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 비율(5% 단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보증) 및 확정연금형(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확정)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기준입니다.

2. 보험기간

주계약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10년, 20년 또는 (101-연금지급 개시나이)년

- ※ 2가지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을 이 보험계약의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봅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4.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5.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 19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5)세
연금지급 개시나이	만 55세 ~ 80세

6. 가입한도(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p>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p> <p>월 3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p>
추가납입보험료	<p>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p> <p>※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하고,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한다.</p>

7.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
제도성 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① 종신연금형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내용
종신연금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생존연금으로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

② 확정연금형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내용
확정연금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의 매년 연계약해당일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에 관계 없이 매년 지급 (확정연금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의 계산은 보험기간(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포함) 중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최초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 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계속 동일할 경우 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되며, 연금지급 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 확정연금지급기간의 '100세'는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연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5조(계약의 세제 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계약의 세제 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8. 2가지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지급 형태별 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합니다.

9. 연금액을 매월, 매 3개월, 매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 수익 등 경영 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로 합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 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 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2.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보험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승계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13. 제12호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및 장기유지보너스적립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제도성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위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

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Q)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 주계약은 운용자산이익률^{주1)}과 객관적인 외부 지표금리^{주2)}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 복리 2.20%(세전)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경됩니다.

주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과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 등을 고려하여 산출

주2)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공시이율의 적용

이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해당 월의 1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Q)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립부분 적용이율의 최저 한도로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셜) 주계약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입니다.

3.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구분	개인연금사망률 (40세 가입 기준)	
	남자	여자
50세 연금개시	0.001130	0.000560
60세 연금개시	0.001890	0.000660
70세 연금개시	0.004030	0.001450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설) 주계약은 해약공제액이 없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30세 가입, 연금지급 개시나이 60세, 목표납입기간 20년, 월납

[최저보증이율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58	95.3%	866	96.3%	858	95.3%	866	96.3%
6개월	1,800	1,718	95.5%	1,736	96.4%	1,718	95.5%	1,736	96.4%
9개월	2,700	2,582	95.6%	2,608	96.6%	2,582	95.6%	2,608	96.6%
1년	3,600	3,448	95.7%	3,483	96.7%	3,448	95.7%	3,483	96.7%
2년	7,200	6,940	96.3%	7,009	97.3%	6,940	96.3%	7,009	97.3%
3년	10,800	10,475	97.0%	10,580	97.9%	10,475	97.0%	10,580	97.9%
4년	14,400	14,054	97.6%	14,195	98.5%	14,054	97.6%	14,195	98.5%
5년	18,000	17,856	99.2%	17,856	99.2%	17,856	99.2%	17,856	99.2%
6년	21,600	21,527	99.6%	21,527	99.6%	21,527	99.6%	21,527	99.6%
7년	25,200	25,235	100.1%	25,235	100.1%	25,235	100.1%	25,235	100.1%
8년	28,800	28,980	100.6%	28,980	100.6%	28,980	100.6%	28,980	100.6%
9년	32,400	32,763	101.1%	32,763	101.1%	32,763	101.1%	32,763	101.1%
10년	36,000	36,583	101.6%	36,583	101.6%	36,583	101.6%	36,583	101.6%
15년	54,000	55,680	103.1%	55,680	103.1%	55,680	103.1%	55,680	103.1%
20년	72,000	75,503	104.8%	75,503	104.8%	75,503	104.8%	75,503	104.8%
25년	72,000	78,194	108.6%	78,194	108.6%	78,194	108.6%	78,194	108.6%
30년	72,000	80,987	112.4%	80,987	112.4%	80,987	112.4%	80,987	112.4%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환급 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59	95.5%	868	96.4%	859	95.4%	868	96.4%
6개월	1,800	1,723	95.7%	1,740	96.7%	1,723	95.7%	1,740	96.7%
9개월	2,700	2,592	96.0%	2,618	96.9%	2,592	96.0%	2,618	96.9%
1년	3,600	3,466	96.2%	3,500	97.2%	3,466	96.2%	3,500	97.2%
2년	7,200	7,008	97.3%	7,078	98.3%	7,008	97.3%	7,078	98.3%
3년	10,800	10,628	98.4%	10,734	99.4%	10,628	98.4%	10,734	99.4%
4년	14,400	14,328	99.5%	14,471	100.5%	14,328	99.5%	14,471	100.5%
5년	18,000	18,291	101.6%	18,291	101.6%	18,291	101.6%	18,291	101.6%
6년	21,600	22,208	102.8%	22,20	102.8%	22,208	102.8%	22,20	102.8%
7년	25,200	26,212	104.0%	26,212	104.0%	26,212	104.0%	26,212	104.0%
8년	28,800	30,304	105.2%	30,304	105.2%	30,304	105.2%	30,304	105.2%
9년	32,400	34,486	106.4%	34,486	106.4%	34,486	106.4%	34,486	106.4%
10년	36,000	38,760	107.6%	38,760	107.6%	38,760	107.6%	38,760	107.6%
15년	54,000	61,582	114.0%	61,582	114.0%	61,582	114.0%	61,582	114.0%
20년	72,000	87,028	120.8%	87,028	120.8%	87,028	120.8%	87,028	120.8%
25년	72,000	96,841	134.5%	96,841	134.5%	96,841	134.5%	96,841	134.5%
30년	72,000	107,783	149.7%	107,783	149.7%	107,783	149.7%	107,783	149.7%

[공시이율(2023.8월 현재 2.20%)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환급 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59	95.4%	868	96.4%	859	95.4%	868	96.4%
6개월	1,800	1,723	95.7%	1,740	96.7%	1,723	95.7%	1,740	96.7%
9개월	2,700	2,592	96.0%	2,618	96.9%	2,592	96.0%	2,618	96.9%
1년	3,600	3,466	96.2%	3,500	97.2%	3,466	96.2%	3,500	97.2%
2년	7,200	7,008	97.3%	7,078	98.3%	7,008	97.3%	7,078	98.3%
3년	10,800	10,628	98.4%	10,734	99.4%	10,628	98.4%	10,734	99.4%
4년	14,400	14,328	99.5%	14,471	100.5%	14,328	99.5%	14,471	100.5%
5년	18,000	18,291	101.6%	18,291	101.6%	18,291	101.6%	18,291	101.6%
6년	21,600	22,208	102.8%	22,20	102.8%	22,208	102.8%	22,20	102.8%
7년	25,200	26,212	104.0%	26,212	104.0%	26,212	104.0%	26,212	104.0%
8년	28,800	30,304	105.2%	30,304	105.2%	30,304	105.2%	30,304	105.2%
9년	32,400	34,486	106.4%	34,486	106.4%	34,486	106.4%	34,486	106.4%
10년	36,000	38,760	107.6%	38,760	107.6%	38,760	107.6%	38,760	107.6%
15년	54,000	61,582	114.0%	61,582	114.0%	61,582	114.0%	61,582	114.0%
20년	72,000	87,028	120.8%	87,028	120.8%	87,028	120.8%	87,028	120.8%
25년	72,000	96,841	134.5%	96,841	134.5%	96,841	134.5%	96,841	134.5%
30년	72,000	107,783	149.7%	107,783	149.7%	107,783	149.7%	107,783	149.7%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3년 8월 현재 연금저축(무배당)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연 복리 2.20%(세전)가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매월 계약해

당일에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해당 상품은 매월 사업비 차감 후 부리됩니다.
-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해당연도의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지시에는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된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 장기유지보너스적립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실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를 경우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을 경우의 실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상기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공시이율은 해당 월의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이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모집수수료율

Q) 모집수수료란?

A)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예시 >

(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40세 가입, 연금지급 개시나이 60세, 20년납, 월납)

[CM채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A(신용카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07%	0.06%	0.06%	0.06%	0.06%	0.00%	0.00%	0.32%

※ 1차년도~7차년도 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가입금액 3,600만원, 남자 30세,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

[수수료 합산표]

경과기간	1~5년(의무납입기간)	6년 이후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 미납 시
보험관계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4.85%	기본보험료의 3.50%	기본보험료의 1.00%

※ 수수료 합산표는 경과기간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나누어 산출.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5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35% (4,050원) 5년 초과 : 없음
	계약관리비용	매월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의 3.50% (10,500원)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 : -보험료 납입시 : 기본보험료의 3.50% (10,500원) -보험료 미납시 : 기본보험료의 1.00% (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해당 사항 없음.	
연금 수령 기간 중 비용	연금 수령 기간 중 관리비용	연금 수령 시	연금연액의 0.7%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 시	해당 사항 없음.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 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중도인출 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 인출 시	해당 사항 없음.

상품요약서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6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8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2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4
모집수수료율	19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20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은 가입 후 언제(청약철회기간 경과 후) 해지하더라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공시이율 저축보험으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은 경과이자(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비례하여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공제금액(상한금액 설정)도 함께 변동됩니다.

Q)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Q)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보험계약의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및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 한도'는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기납입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 금액의 합계

(주)

1. 가입경과월수 :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고, 이후 월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씩 증가
2. 기납입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3. 중도인출 금액의 합계 : 이 보험계약의 약관 제39조(중도인출)에 따른 인출 금액의 합계

-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 × 200% + 중도인출 금액의 합계

Q)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A)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간(보험 연도 기준) 총 12회까지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① 중도인출 할 때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중도인출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간(보험 연도 기준) 1회 인출부터 4회 인출까지는 중도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② 중도인출 1회당 인출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의 총 인출 금액은 보험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④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 할 경우, 인출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⑤ 중도인출 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 및 중도인출 금액이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되므로, 중도인출 이후의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은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의 적용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 주계약의 적용이율은 보장부분 적용이율과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1개월마다 변동)로 구분되며,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의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를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합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Q)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의 '만기유지보너스'는 무엇인가요?

A) 기본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만기까지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만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만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
1년만기, 2년만기, 3년만기	만기시점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0.3%
10년만기	만기시점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1.8%

※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및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적립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년만기	전기납	만 19세 ~ 70세	월납
2년만기	전기납		
3년만기	전기납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3. 가입한도(납입보험료 한도)

기본 보험료	<p>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 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p> <p style="text-align: center;">월 5만원 이상</p> <p>※ 다만, 기본보험료가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구좌로 하며, 기본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단위로 1구좌씩 증가</p>
추가납입 보험료	<p>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p> <p>√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기납입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 금액의 합계</p> <p>√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 × 200% + 중도인출 금액의 합계</p>

※ 가입한도 등 계약 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
제도성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만기보험금 (약관 제3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액
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100%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주)

- 계약자적립액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자적립액은 만기유지보너스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 수익 등 경영 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로 합니다.)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만기유지보너스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도성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

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 주계약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Q)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 주계약은 운용자산이익률^{주1)}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주2)}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 복리 2.20%(세전)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경됩니다.

주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과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 등을 고려하여 산출

주2)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공시이율의 적용

이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해당 월의 1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Q)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립부분 적용이율의 최저 한도로서,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 주계약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입니다.

4.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310	0.000180
40세	0.000780	0.000470
60세	0.004550	0.001730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1년 부터e저축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무배당 1년부터e저축보험은 해약공제액이 없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40세 가입,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저보증이율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901	100.1%	917	101.9%	901	100.1%	917	101.9%
6개월	1,800	1,804	100.2%	1,837	102.0%	1,804	100.2%	1,837	102.0%
9개월	2,700	2,708	100.3%	2,757	102.1%	2,708	100.3%	2,757	102.1%
1년	3,600	3,612	100.3%	3,677	102.1%	3,612	100.3%	3,677	102.1%
2년	7,200	7,231	100.4%	7,361	102.2%	7,231	100.4%	7,361	102.2%
3년	10,800	10,857	100.5%	11,052	102.3%	10,857	100.5%	11,052	102.3%
4년	14,400	14,504	100.7%	14,765	102.5%	14,504	100.7%	14,766	102.5%
5년	18,000	18,174	100.9%	18,501	102.7%	18,174	100.9%	18,501	102.7%
6년	21,600	21,837	101.1%	22,230	102.9%	21,837	101.1%	22,230	102.9%
7년	25,200	25,537	101.3%	25,996	103.1%	25,537	101.3%	25,997	103.1%
8년	28,800	29,274	101.6%	29,801	103.4%	29,274	101.6%	29,801	103.4%
9년	32,400	33,048	102.0%	33,643	103.8%	33,049	102.0%	33,644	103.8%
10년	36,000	37,523	104.2%	37,523	104.2%	37,525	104.2%	37,525	104.2%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902	100.3%	919	102.1%	902	100.3%	919	102.1%
6개월	1,800	1,808	100.4%	1,840	102.2%	1,808	100.4%	1,840	102.2%
9개월	2,700	2,715	100.5%	2,763	102.3%	2,715	100.5%	2,763	102.3%
1년	3,600	3,622	100.6%	3,687	102.4%	3,622	100.6%	3,687	102.4%
2년	7,200	7,262	100.8%	7,393	102.6%	7,262	100.8%	7,393	102.6%
3년	10,800	10,942	101.3%	11,138	103.1%	10,942	101.3%	11,139	103.1%
4년	14,400	14,686	101.9%	14,951	103.8%	14,687	101.9%	14,951	103.8%
5년	18,000	18,513	102.8%	18,847	104.7%	18,514	102.8%	18,847	104.7%
6년	21,600	22,425	103.8%	22,828	105.6%	22,425	103.8%	22,829	105.6%
7년	25,200	26,422	104.8%	26,898	106.7%	26,423	104.8%	26,898	106.7%
8년	28,800	30,507	105.9%	31,056	107.8%	30,508	105.9%	31,057	107.8%
9년	32,400	34,682	107.0%	35,307	108.9%	34,683	107.0%	35,308	108.9%
10년	36,000	39,650	110.1%	39,650	110.1%	39,652	110.1%	39,652	110.1%

[공시이율(2023.8월 현재 2.20%)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902	100.3%	919	102.1%	902	100.3%	919	102.1%
6개월	1,800	1,808	100.4%	1,840	102.2%	1,808	100.4%	1,840	102.2%
9개월	2,700	2,715	100.5%	2,763	102.3%	2,715	100.5%	2,763	102.3%
1년	3,600	3,622	100.6%	3,687	102.4%	3,622	100.6%	3,687	102.4%
2년	7,200	7,262	100.8%	7,393	102.6%	7,262	100.8%	7,393	102.6%
3년	10,800	10,942	101.3%	11,138	103.1%	10,942	101.3%	11,139	103.1%
4년	14,400	14,686	101.9%	14,951	103.8%	14,687	101.9%	14,951	103.8%
5년	18,000	18,513	102.8%	18,847	104.7%	18,514	102.8%	18,847	104.7%
6년	21,600	22,425	103.8%	22,828	105.6%	22,425	103.8%	22,829	105.6%
7년	25,200	26,422	104.8%	26,898	106.7%	26,423	104.8%	26,898	106.7%
8년	28,800	30,507	105.9%	31,056	107.8%	30,508	105.9%	31,057	107.8%
9년	32,400	34,682	107.0%	35,307	108.9%	34,683	107.0%	35,308	108.9%
10년	36,000	39,650	110.1%	39,650	110.1%	39,652	110.1%	39,652	110.1%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3년 8월 현재 저축(무배당)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연 복리 2.20%(세전)가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중 만기시점 해약환급금은 만기유지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해당 상품은 매월 위험보험료 및 경과이자 비례 사업비 차감 후 부리됩니다.

※ 실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를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을 경우 또는 중

도인출이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경우의 실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상기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이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모집수수료율

Q) 모집수수료란?

A)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예시 >

(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CM채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A(신용카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14%	0.00%	0.00%	0.00%	0.00%	0.00%	0.00%	0.14%

※ 1차년도~7차년도 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보험가입금액 3,60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피보험자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수수료 합산표]

경과기간	1 ~ 10년
보험관계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최소 0.0060% ~ 최대 3.8140%

※ 수수료 합산표는 경과기간별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나누어 산출.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경과이자의 5.0% 최대 (6,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경과이자의 15.0% 최대 (5,400원) - 납입기간 이후 : 해당사항 없음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60% ~ 0.0140% (18원 ~ 42원)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 시	해당 사항 없음.

※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경과이자 : 월계약해당일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 후 매월 (월계약해당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경과이자의 15.0% (단,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중도인출 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 시	1회당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경과이자 : 월계약해당일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중도인출 수수료는 연간(보험 연도 기준) 1회 인출부터 4회 인출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상품요약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II (유니버설)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II(유니버설)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품의 특이사항	3
보험가입 자격요건	7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9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17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7
모집수수료율	22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23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셜)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셜)은 가입 후 1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며, 소액의 자금(최저 월납보험료 3만원)으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는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셜)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월 3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셜)의 보험료는 어떻게 납입해야 하나요?

A)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

: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 가입경과월수'을 말합니다.)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한도 이내에서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설)의 목표 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 (Target Annuity Pacemaker Service)는 무엇인가요?

A)

- ① '목표 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라 함은 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보험계약자가 설정한 목표 연금액 이상이 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목표 납입기간(월수) 종료 시점 이후부터 연금지급 개시일까지 1년에 1회(목표 납입기간(월수) 종료 시점을 포함합니다.) 이상 다음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장래 연금 예상액에 관한 사항
 2. 장래 연금 예상액이 목표 연금액에 미달한 경우 장래 연금 예상액이 목표 연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납입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보험료 및 목표 납입기간(월수)의 연장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보험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보험료 납입 한도 등)
- ③ 보험계약자는 목표 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 목표 연금액 : 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설정한 금액
- 목표 납입기간(월수) : 이 보험계약의 목표 연금액 달성을 위해 최소 60개월(5년, 60회 납입)에서 최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월 단위로 설정한 기간(월수)
- 장래 연금 예상액 :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액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설)의 '연금지급 연기 제도'는 무엇인가요?

- A)** 연금지급 연기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시점을 일정 기간(최장 5년) 연기시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① 연금지급 연기의 신청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취소는 연금지급 연기 기간을 포함하여 연금지급 개시 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당초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기 기간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연기 기간이 지난 후에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기 기간이 지난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연금지급 연기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설)은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가능한가요?

- A)**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간(보험 연도 기준) 총 12회까지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간(보험 연도 기준) 1회 인출부터 4회 인출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②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1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의 총 인출 금액은 보험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④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6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⑤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 금액 및 인출 금액이 부리되는 이자 만큼 해약환급금 약 차감되며, 계약자적립액 인출 이후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은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과 연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설)의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는 무엇인가요?

A) 회사는 계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아래의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경우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구분	기본보험료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1	30만원 이상	60회차 월계약해당일 ^(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1 발생일 전일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1.2%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2		120회차 월계약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2 발생일 전일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2.0%

(주) 최종 의무납입회차(60회) 납입일이 60회차 월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종 납입회차 납입일을 60회차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설)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종신연금형(10년(10회)보증 / 20년(20회)보증 /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보증)
 확정연금형(10년(10회)확정 / 20년(20회)확정 /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확정)
 상속연금형

-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종신연금형의 연금지급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 형태를 복수(2가지 이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 비율(5~100%, 5% 단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약관 제24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지급 형태 및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 비율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보증) 및 확정연금형(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확정)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기준입니다.

2. 보험기간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주계약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계약 체결 후 연금지급 형태 변경 시]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10년, 20년, (101- 연금지급 개시나이)년 -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 연기 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 2가지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을 이 보험계약의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봅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4.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5.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 19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10)세
연금지급 개시나이	45세 ~ 80세

6. 가입한도(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월 3만원 이상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액 √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 =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 × 200%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액

7.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셜)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셜)
제도성특약	+ 단체취급특약Ⅱ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2.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보장 부분]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내용
사망보험금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주) 연금지급 연기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연금 부분]

① 종신연금형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내용
종신연금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생존연금으로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

② 확정연금형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내용
확정연금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의 매년 연계약해당일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에 관계 없이 매년 지급 (확정연금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

③ 상속연금형

급부명	지급 사유	지급 내용
상속연금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상속연금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매년 생존연금으로 지급 (다만,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의 상속연금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의 계산은 보험기간(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포함) 중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최초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 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계속 동일할 경우 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되며, 연금지급 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 확정연금지급기간의 '100세'는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연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중에는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101-연금지급 개시나이)회))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잔여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2가지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지급 형태별 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합니다.
9. 제5호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제7호의 확정연금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확정연금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연금액을 매월, 매 3개월, 매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1.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 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로 합니다.)
12. 상속연금형의 계약자적립액은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1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 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 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도성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적용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 받은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①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관련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

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서를 본인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II(유니버설) 주계약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 복리 2.50%입니다.

2.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Q)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II(유니버설) 주계약은 운용자산이익률^{주1)}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금리^{주2)}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을 가감하여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 복리 2.17%(세전)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경됩니다.

주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과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 등을 고려하여 산출

주2)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공시이율의 적용

이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Q)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립부분 적용이율의 최저 한도로서,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설) 주계약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입니다.

4.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개인연금사망률 (40세 가입 기준)	
	남자	여자
50세 연금개시	0.001130	0.000560
60세 연금개시	0.001890	0.000660
70세 연금개시	0.004030	0.001450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설)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Ⅱ(유니버설) 주계약은 해약공제액이 없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40세 가입, 연금개시나이 60세, 목표납입기간 10년, 월납

[최저보증이율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46	94.0%	856	95.1%	846	94.0%	856	95.1%
6개월	1,800	1,694	94.1%	1,715	95.2%	1,695	94.1%	1,715	95.3%
9개월	2,700	2,546	94.3%	2,576	95.4%	2,546	94.3%	2,577	95.4%
1년	3,600	3,400	94.4%	3,441	95.5%	3,400	94.4%	3,441	95.6%
2년	7,200	6,843	95.0%	6,925	96.1%	6,844	95.0%	6,926	96.2%
3년	10,800	10,328	95.6%	10,452	96.7%	10,330	95.6%	10,454	96.8%
4년	14,400	13,858	96.2%	14,024	97.3%	13,860	96.2%	14,027	97.4%
5년	18,000	17,640	98.0%	17,640	98.0%	17,644	98.0%	17,644	98.0%
6년	21,600	21,289	98.5%	21,715	100.5%	21,294	98.5%	21,719	100.5%
7년	25,200	24,974	99.1%	25,474	101.0%	24,980	99.1%	25,480	101.1%
8년	28,800	28,696	99.6%	29,270	101.6%	28,703	99.6%	29,277	101.6%
9년	32,400	32,455	100.1%	33,104	102.1%	32,463	100.2%	33,113	102.2%
10년	36,000	36,976	102.7%	36,976	102.7%	36,986	102.7%	36,986	102.7%
15년	36,000	37,997	105.5%	37,997	105.5%	38,018	105.6%	38,018	105.6%
20년	36,000	39,045	108.4%	39,045	108.4%	39,086	108.5%	39,086	108.5%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47	94.1%	857	95.2%	847	94.1%	857	95.3%
6개월	1,800	1,699	94.4%	1,719	95.5%	1,699	94.4%	1,720	95.5%
9개월	2,700	2,555	94.6%	2,586	95.8%	2,556	94.6%	2,587	95.8%
1년	3,600	3,417	94.9%	3,458	96.0%	3,417	94.9%	3,458	96.0%
2년	7,200	6,908	95.9%	6,991	97.1%	6,909	95.9%	6,992	97.1%
3년	10,800	10,475	96.9%	10,600	98.1%	10,477	97.0%	10,602	98.1%
4년	14,400	14,119	98.0%	14,288	99.2%	14,122	98.0%	14,291	99.2%
5년	18,000	18,056	100.3%	18,056	100.3%	18,060	100.3%	18,060	100.3%
6년	21,600	21,942	101.5%	22,381	103.6%	21,947	101.6%	22,386	103.6%
7년	25,200	25,913	102.8%	26,431	104.8%	25,918	102.8%	26,437	104.9%
8년	28,800	29,969	104.0%	30,568	106.1%	29,976	104.0%	30,576	106.1%
9년	32,400	34,113	105.2%	34,795	107.3%	34,122	105.3%	34,804	107.4%
10년	36,000	39,114	108.6%	39,114	108.6%	39,124	108.6%	39,124	108.6%
15년	36,000	43,145	119.8%	43,145	119.8%	43,167	119.9%	43,167	119.9%
20년	36,000	47,620	132.2%	47,620	132.2%	47,665	132.4%	47,665	132.4%

[공시이율(2023.8월 현재 2.17%) 가정]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 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 환급금 (D)	환급률 (D/A)	계약자 적립액 (E)	적립률 (E/A)
3개월	900	847	94.1%	857	95.2%	847	94.1%	857	95.3%
6개월	1,800	1,699	94.4%	1,719	95.5%	1,699	94.4%	1,720	95.5%
9개월	2,700	2,555	94.6%	2,586	95.8%	2,556	94.6%	2,587	95.8%
1년	3,600	3,417	94.9%	3,458	96.0%	3,417	94.9%	3,458	96.0%
2년	7,200	6,908	95.9%	6,991	97.1%	6,909	95.9%	6,992	97.1%
3년	10,800	10,475	96.9%	10,600	98.1%	10,477	97.0%	10,602	98.1%
4년	14,400	14,119	98.0%	14,288	99.2%	14,122	98.0%	14,291	99.2%
5년	18,000	18,056	100.3%	18,056	100.3%	18,060	100.3%	18,060	100.3%
6년	21,600	21,942	101.5%	22,381	103.6%	21,947	101.6%	22,386	103.6%
7년	25,200	25,913	102.8%	26,431	104.8%	25,918	102.8%	26,437	104.9%
8년	28,800	29,969	104.0%	30,568	106.1%	29,976	104.0%	30,576	106.1%
9년	32,400	34,113	105.2%	34,795	107.3%	34,122	105.3%	34,804	107.4%
10년	36,000	39,114	108.6%	39,114	108.6%	39,124	108.6%	39,124	108.6%
15년	36,000	43,145	119.8%	43,145	119.8%	43,167	119.9%	43,167	119.9%
20년	36,000	47,620	132.2%	47,620	132.2%	47,665	132.4%	47,665	132.4%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3년 8월 현재 연금(무배당)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연 복리 2.17%(세전)가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해당 상품은 매월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차감 후 부리됩니다.
-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해당연도의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지시에는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된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에 고액계약 장기유지보너스적립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실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를 경우 또는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을 경우의 실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상기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공시이율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이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25%입니다.

모집수수료율

Q) 모집수수료란?

A)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예시 >

(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40세, 연금지급 개시나이 60세, 전기납, 월납)

[CM채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A(신용카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07%	0.07%	0.07%	0.07%	0.07%	0.00%	0.00%	0.35%

- ※ 1차년도~7차년도 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가입금액 3,60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40세, 연금지급 개시나이 60세, 전기납, 월납)

[수수료 합산표]

경과기간	1~5년	6년 이후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 미납 시
보험관계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6.179% ~ 6.192%	기본보험료의 4.057% ~ 4.208%	기본보험료의 2.057% ~ 2.208%

※ 수수료 합산표는 경과기간별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나누어 산출.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5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64% (4,92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 내 : 기본보험료의 4.50% (13,500원)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후 - 보험료 납입 시 : 기본보험료의 4.00% (12,000원) - 보험료 미납 시 : 기본보험료의 2.00% (6,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390% ~ 0.2080% (117원 ~ 624원)	
연금 수령 기간 중 비용	연금 수령 기간 중 관리비용	연금 수령 시	연금연액의 0.7%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 시	해당 사항 없음.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 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0%
중도인출 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 인출 시	1회당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전에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 금액 이내에 해당하는 추가 납입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계약관리비용으로 합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는 연간(보험 연도 기준) 1회 인출부터 4회 인출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